

2016년

미국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



2016년

미국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



❧ 들어가는 말 ❧

최근 각 국의 新보호무역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85%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도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야 하며,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글로벌 경제리스크에 늘 주목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2개국과 15개의 FTA를 체결하였고 이들 국가와의 무역비중은 68%에 달하는 등 전면적인 시장개방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식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농식품 수출은 공산품과는 달리 수입국의 국민건강과 직결되므로 통관·검역 및 위생허가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한 유통구조와 높은 물류비용 등 극복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난해 우리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약 6% 증가한 65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수출확대와 수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자, 각종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담아 「미국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활한 해외진출과 시장 개척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수시로 수출관련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최신 개정사항은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사이트인 www.kati.net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2016년 미국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

- 제1장 시장개요 1
 - 제1절 대미 수출실적 1
 - 제2절 시장여건 2
 - 제3절 소비트렌드 3
 - 제4절 유통현황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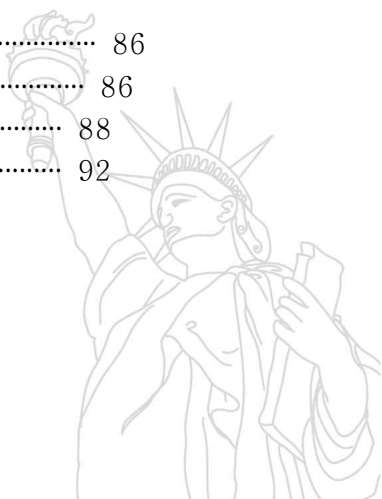
- 제2장 통관제도 6
 - 제1절 통관절차 6
 - 제2절 품목별 통관제도 35
 - 제3절 관련제도 40

- 제3장 검역제도 44
 - 제1절 검역제도 일반 44
 - 제2절 품목별 검역제도 46

- 제4장 라벨링제도 50
 -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50
 - 제2절 품목별 표기방법 57
 - 제3절 참고자료 59

- 제5장 통관문제사례 및 시사점 63
 - 제1절 통관문제사례 동향 63
 - 제2절 시사점 및 대응방안 69
 - 제3절 법률규정 및 최근 동향 73

- 제6장 수출업체 애로사항 86
 - 제1절 애로사항 해소사례(aT지원) 86
 - 제2절 수출애로 및 건의사항 88
 - 제3절 aT 현지화 지원사업 안내 92



제 1 장 시장개요

제 1 절

대미 수출실적

1. 한국 농식품 수출입 실적

(단위 : 톤, 천달러)

구분	2014		2015		2016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수출	226,220	594,257	237,911	627,213	279,910	715,945
수입	11,638,831	7,773,930	9,638,951	6,999,938	10,662,081	6,851,569

출처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KATI-AG코드 기준, 수산물제외)

2. 최근 3개년 수출 상위 5품목

(단위 : 천달러)

구분	2014		2015		2016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1 위	음료	59.8	커피	91.5	커피	103.8
2 위	커피	59.4	음료	62.7	음료	69.0
3 위	배	29.2	라면	29.6	라면	35.3
4 위	라면	26.1	신선배	26.5	신선배	30.5
5 위	비스킷	24.2	비스킷	21.5	비스킷	26.5

출처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KATI-AG코드 기준, 수산물제외)

1. 넓은 국토 면적과 다양한 인종 등 식품 시장 확대가능성이 큼

- ❖ 넓은 지리적 환경 및 다양한 기후 조건과 도시별 고른 인구분포
- ❖ 농경지면적 세계 1위, 농업인구 1인당 경지면적 세계 3위 국가로 세계 곡물 생산량의 약 20%, 교역량의 35%를 점유하고 있음
- ❖ 식품시장의 규모는 2015년 1조 174억 달러로 전년대비 1.8% 성장. 전 세계 식품시장 (5조 5,639억 달러)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로 세계 2위의 식품시장의 규모를 갖추고 있음(Data monitor)
- ❖ 기술의 발달 및 농업의 기계화, 화학재료의 발달로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

2. 한-미 FTA 체결이후 대미 수출비중 지속적 성장 추세

- ❖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협정으로 양국가간 무역규모 지속적으로 성장
- ❖ 한-미 FTA 상품 분야는 전체 수입량의 약 94%에 대해 관세 조기 철폐를 합의, 높은 수준의 개방률을 보이며 대미 농식품 수출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세

3. 다양한 유통채널 및 물류인프라 발달

- ❖ 슈퍼마켓, 식료품점, 농산물 직판장,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이 존재하며 점포 수준 역시 유기농/프리미엄 제품을 파는 곳부터 저렴한 제품을 파는 곳까지 다양함
- ❖ 해상, 항공, 육상 물류 인프라 수준이 높으며 온라인식품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짐

1. 미국 소비자들의 연간 식품 소비지출은 평균 7,023달러로 총 지출액의 약 12.6%를 차지

2. 개인주의 성향 강화 및 1인가구 증가로 간편식 및 포장식품 소비 증가

- ❖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포장식품과 냉동식품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 ❖ 식사를 대신하는 간식 제품의 판매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3. 유기농과 비건(Vegan) 채식 등 건강한 식생활에 관심으로 유기농, 글루텐프리, NON GMO 시장 확대 추세

- ❖ 미국의 유기농 제품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 ❖ 미국 소비자의 36%가 우유 대체재나 고기 대체재 사용을 선호하며, 단순히 동물보호를 위해 채식을 택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비건(Vegan) 제품을 깨끗하고 건강한 재료로 인식하고 있음
- ❖ 1997년 36억 달러 규모였던 미국의 유기농 시장은 2015년 약 433억 달러의 규모로 지난 30년 동안 3,400% 성장했으며, 과일 및 채소가 현재 유기농 시장의 약 57%, 유제품이 16.5%, 가공식품이 15.4%를 차지

4. 2017 USDA 농업전망 선정 소비트렌드 5가지 키워드

- ❖ 건강과 웰빙 : “건강(healthy)”의 정의가 변함(신선, 네추럴, 유기농, 고단백, non-GMO), 가
공과정 최소화 및 클린레이블 선호
- ❖ 투명화 : 자신이 소비하는 식품이 무엇이 들어있고, 어디서 생산되고, 어떻게 생산되
는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되기 원함
- ❖ Hybrid consumer : 질적으로 좋은 성분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수요(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니즈가 증가함
- ❖ 편리성 : 식재료준비 시간 단축, 1인용 용기제품, 배달편의성과 전통식사법에서 벗어
나 스낵종류가 식사를 대체하고 있음
- ❖ 참신성과 커스터마이징 : 밀레니얼 세대들은 새롭고 혁신적인 것에 도전 선호(에스
닉 식품), DIY 옵션과 개인맞춤형 마케팅을 선호함

5. 2017년 미국 농업전망

생산	교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축산물 생산량증가, 재고증가 ·농산물 가격하락, 농가수입 감소 ·농가수취가 감소 장기화조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경기회복으로 수출증가 ·최대수출국인 중국수출증가 ·브라질, EU, 러시아와 수출경쟁심화 ·내수감소 등으로 수출 의존성 증가
소비	농업정책 및 통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가격 지속 하락세 ·상위소득 40%가 전체 식품소비 60% 차지 ·밀레니얼세대 소비주도, 유통매장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Farm Bill 2018 Reform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소득보존과 저소득층 식품 ·TPP, NAFTA, 이민정책, 세제정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분야는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함

1. 유통채널별 판매액

(단위 : 백만불)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1,167.5	1,196.8	1,226.6	1,259.2	1,285.0
슈퍼마켓	614.9	631.0	647.4	665.5	680.0
대형유통업체	316.8	323.1	329.3	335.9	341.0
할인마트	172.6	177.2	181.9	187.0	191.1
편의점	63.1	35.5	68.0	70.7	72.9

출처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United States Food&Drink 2016 Q1(2016)

- ❖ 유통채널별 식품 관련 판매액을 보면, 슈퍼마켓이 전체 유통채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일반 가정으로 소비되는 식품의 경우 슈퍼마켓, 대형유통업체, 할인마트, 편의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음
- ❖ 유통채널의 판매액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미국의 10대 유통체인 ■

(단위 :천불, %)

순위	회사명	2015년 매출액	증감률('14년대비)
1	Wal-Mart Stores	353,108	2.8
2	The Kroger Co.	103,878	0.8
3	Costco	83,545	4.8
4	The Home Depot	79,297	6.9
5	Walgreen	76,604	6.0
6	Target	73,226	0.8
7	CVS Health	72,151	6.2
8	Amazon.com	61,619	23.1
9	Albertsons	58,443	4.8
10	Lowe's companies	57,486	4.9

출처 : National Retail Federation(nrf.com)

제 2 장 통관제도

제 1 절

통관절차

1. 통관절차

가. 통관절차

■ 수입통관절차 ■



출처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나. 통관절차별 유의사항

수출절차	유의사항
서류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 서류(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수입허가증빙서류 등) - 통관서류 서류(선하증권, 상업송장, 세관수입신고서,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선적 및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업자는 AMS(Automated Manifest System)을 통해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적하목록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 제출해야 함 - 적하목록 제출 시기는 운송수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운송 수단별 확인 필요
수입신고 검사 및 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 및 수입허가 :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진행 - 검역 : 미국 농무부(USDA)¹⁾ 소속 식품 안전 검사국(FSIS²⁾) 및 동식물 검역국(APHIS³⁾)에서 진행
세금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Custom Bond) 납부 - 세금납부 : 세관 반입 후 10일 이내 납부

출처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다. 서류준비

- ❖ 미국으로 식품을 수입 신고할 때는 요구되는 제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함
 - 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상업송장, 세관수입신고서, 구매확인서,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수입허가증빙서류 등
- ❖ 수입자는 미국 내 수입식품 신고 시 상업송장에 물품이 도착한 통관항, 물품이 합의된 시간과 장소에서 판매되기로 한 경우 그 시간과 선적지, 송하인과 수하인의 성명, 물품의 구체적인 명세, 품명, 품질등급, 화인, 번호, 물품의 중량, 용적 및 수량, 물품이 판매되었거나 판매되기로 합의된 구매가격, 통화의 종류, 원산지를 기입해야 함
- ❖ 미국은 농수산물·식품 및 소비자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이 우리나라보다 까다롭고 법 집행도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의 C-TPAT⁴⁾와 선적정보 도착 전 송부, 미 FDA의 식품제조시설 사전등록 및 식품선적정보 사전송부 등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고 있어야 함

1) USDA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2) FISIS :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3)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4) C-TPAT란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의 약자로, 미국 관세청에서 지난 2002년 4월부터 운영하는 대테러 방지 무역 파트너십 프로그램

- ❖ C-TPAT는 수입업체의 보안 수준을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해 대미국 수입을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관절차를 더욱 신속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라. 선적 및 운송

- ❖ 수출통관은 기업이 직접 하거나 관세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음. 관세사는 세관에 수출 신고 후 받은 수출신고필증을 기업이나 포워딩 업체에 교부함. 기업이 수출통관을 직접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를 이용하여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의 절차를 온라인(www.unipass.or.kr)으로 처리할 수 있음
- ❖ 특히 운송업자의 경우 '24 Hour Rule'에 근거하여 화물 전자 신고 시스템(AMS; Automated Manifest System)을 통해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하루 전, 적하 목록을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제출해야 함. 적하목록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양하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됨

마. 수입신고 및 검사검역

- ❖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물품들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거쳐야 되며 최종 화물반출이 이루어지기까지 보세창고에 보관됨. 수입자는 화물이 미국에 도착한 후 15일 이내에 관세사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위한 보증금(Custom Bond)을 준비해야 함
- ❖ 수입식품의 경우, 세관국경보호국(CBP) 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입신고서를 접수하고 수입허가를 요청해야 함. FDA는 신고된 서류를 검토한 후 수입식품의 위생 검사를 진행하며 샘플검사는 CBP 규정에 따름
- ❖ 수입식품에 대해 FDA에서 검사가 필요없는 식품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입국이 바로 허가 됨. 검사가 필요한 식품은 샘플검사가 시행되고, 안전적합판정을 받으면 즉시 입국이 허가되나 불합격 시 입국이 거부됨. 불합격 판정에 대해서는 수입업체의 이의제기가 가능함

- ❖ 수입신고와 더불어 선택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정이 2가지 있음. 하나는 ‘사전공고 규정 자율 준수(Informed Compliance)⁵⁾’이며, 다른 하나는 ‘사전 고지(ABC's prior disclosure)⁶⁾’임
- ❖ 신고사항을 모두 완료하면 물품 및 서류 심사가 시행됨. 수입식품의 경우 세관국경 보호국 내 미국식품의 식품의약국(FDA)의 판단기준에 따라 고위험군에 해당될 경우에만 시행되며, 샘플검사와 서류검사가 동시에 진행됨
- ❖ 수입식품의 경우 서류 및 샘플검사 시행 시 원산지 표기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표기하지 않을 시 총 과세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바. 세금납부

- ❖ 미국은 통관 시에 부과될 모든 관세 및 조세 등 각종 비용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세관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보증서는 미국 재무부가 지정해 준 보험회사에서 발행받아 보증금을 납부하면 통관이 완료됨
- ❖ 보증서는 ‘일회성 보증서(Single Bonds)’와 ‘계속성 보증서(Continuous Bonds),’현금 담보(Cash Deposit) 세 종류로 구분됨. ‘일회성 보증서(Single Bonds)’는 한 번의 물품 신고에 대하여 제공되는 보증서이며, ‘계속성 보증서(Continuous Bonds)’는 수입 횟수에 관계없이 유효기간 1년 내의 수입 건에 대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보증임⁷⁾
- ❖ 세금은 세관 반입 이후 10일 이내 납세를 신고하며 납세신고 시, 납세신고서와 물품 반출을 허가받은 통관서류, 상업송장 등 관세 책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함. 자율적으로 세 번, 과세가격, 관세액을 결정하여 예정 관세액을 우선 납부하면 물품이 반출되고 통관이 완료 됨. 이후 사후심사를 통해 확정 관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

5) 사전공고 규정 자율 준수(Informed Compliance)란 미국의 복잡한 통관절차를 쉽게 통과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서류와 물품 검사의 불합격 비율을 낮출 수 있음. 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입관련 물품 명세, 품목분류와 관련된 과세가격, 원산지 및 수입 쿼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질문에 대답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세관국경보호국에 제출하면 됨

6) 사전 고지(ABC's prior disclosure)란 수입규정 위반 사항을 미국 관세청에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

7) 주 LA 총영사관, ‘미국 통관제도 설명’, 2014

■ 농산물 수입절차 요약 ■

- 1) 수입회사가 입국신청서(Entry Notice)를 접수시키고 관세청의 통과를 위한 보증금(Customs bond)을 준비
- 2) 국토안보국(CBP)내 관세국경보호청에서 FDA에 수입신고서를 접수시키고 수입허가 결정을 요청함
- 3) USDA와 FDA는 수입서류를 검토하여 수입품에 대해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즉시 입국이 허가됨
- 4)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FDA가 샘플조사를 하며 FDA직원이 샘플을 수거해 FDA 실험실로 조사를 의뢰. USDA는 exam site에 보내어져 물품을 직접 검사함
- 5) 샘플조사 결과 FDA 실험실에서 안전하다고 판정되면 그 즉시 입국이 허가되고 불합격 판정이 나면 제품이 억류됨
- 6) 불합격 판정이 난 품목에 대해서는 불합격 이유를 확인한 후 교정하여 재검사를 통한 통관 혹은 수입업체의 서면 및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
- 7) 재검사 결과, FDA에서 승인이 되지 않을 시 전량 폐기처분 또는 반송조치가 취해짐

2. 식품 수입 및 관세제도

가. 미국은 2001. 9. 11 테러, 탄저균사건 이후 식품공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롭게 법률을 제정하는 등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나. 식품분야도 “공공보건과 바이오테러대응법(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 public Law 107-188:The Bioterrorism Act)”을 2002. 6.12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다. 바이오테러대응법은 5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바이오테러 3번 주제의 하부 주제 A(식품공급의 보호)의 세부조항은 아래와 같음

- ❖ 식품관련시설의 등록
- ❖ 식품수입의 사전신고
- ❖ 식품에 관한 기록의 정비 및 보존
- ❖ 행정적 억류조치

라. 수산물/식품의 위해요소 분석 및 중점 관리 규정(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21 CFR Parts 120 and 123)]

- ❖ 위해 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은 생산, 제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위생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임. 특별히 수산물 식품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집행함
- ❖ 패류 위생처리 프로그램(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마. 관세제도

- ❖ 관세법(Customs Act) : 미국의 통관 및 관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수입시 준수사항 (Importation), 관세평가(Calculation of Duty), 감세 및 환불 (Abatements and Refunds) 등을 규정하고 있음
- ❖ 관세율표(Customs Tariff) : 관세부과 및 부과된 관세의 환불에 관한 규정
- ❖ 관세평가 방법 : 미관세청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관세율표는 “Harmonized Tariff Schedule”로 매년 당해연도의 품목별 정확한 관세율을 표시하고 있음

3. 통관수속 및 화물의 통관

가. 세관 통관 절차

1) 통관절차의 형식

상품의 수입통관은 관세납부의무의 시점에 따라 일반수입통관, 보세통관 및 임시통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일반통관의 경우에는 통관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 보세통관은 통관 후 일정 보세기간 동안 관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한편 임시통관의 경우는 납세납부의 의무가 없으나 일정조건 위반시 특별의무가 발생함

2) 통관절차 흐름도



3) 세관 조직과 임무

9.11 테러사건 이후 국토안보법에 의거하여 기존의 세관이 이민국과 동식물검사국의 검사기능과 인력을 통합하여 세관 및 국경보호국으로 국토안보부 산하에 확장 편성됨.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미국역사상 최초로 국경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통합된 국경수비 연방기관으로서 철저하고 효과적인 국경관리, 통제, 보호조치를 통하여 테러분자와 테러용 무기류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역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촉진시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 운영예산은 110억불 이상이며 고용인원은 약 5만 8천여 명에 이룸. 주요 조직으로는 Office of Field Operations, Office of Border Patrol, Office of Air and Marine,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와 327개에 이르는 일선 통관항 세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수입자의 자격 및 책임

- ❖ 많은 국가의 경우 수입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수입업 면허가 필요하고 개개 수입거래에는 외환송금을 위한 수입인증이 필요함. 그러나 이와 달리 미국은 누구든지 수입업에 종사할 수 있는데, 주류 및 기타소수의 특정상품을 제외하고는 수입상 면허라는 제도 자체가 없고 외환의 해외유출을 통제하지 않으므로 수입인증 제도도 존재하지 않음. 다만 수입통관 전에 일반적으로 연방소득세 등록번호와 함께 세관에 수입자등록을 함. 등록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복수의 수입부서를 갖거나 수입지역이 분산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는 복수의 등록을 취득할 수도 있음. 복수등록제도는 기업 내부에서 수입통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됨
- ❖ 미국에서 설립된 기업도 외국인 지배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업에 종사할 수 있음. 더욱이 외국의 기업도 조건만 만족시키면 미국 내 연락사무소 또는 대리인의 지정을 통하여 수입자로서 직접 통관행위를 할 수 있음. 이는 외국의 기업이 미시장의 직접 진출을 위한 처음단계로서 활용하는 제도임

- ❖ 수입자는 당해 수입상품의 선하증권상 수하인 또는 소유자일 때에만 통관행위를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는 수하인과 소유자는 동일인이지만 무역거래의 특성상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음. 예를 들어 수출자 또는 구매자의 미국내 대리인이 수하인인 경우는 수하인과 구매자는 동일인이 아님. 한편 수입자금의 금융자가 담보권행사를 위하여 수하인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결국 수하인 또는 소유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통관신고 및 그에 따른 통관행위를 할 수 있고 그 통관신고자는 미 관세법상 수입자로 간주되어 당해상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법상 모든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됨
- ❖ 수하인과 소유자의 동일인 여부를 가리는 것은 미 관세법 및 기타 다른 수입품에 관한 법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며,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기타 다른 법규는 관세법과의 별도의 개념 아래에서 수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수하인과 구매자의 동일인 여부를 가리는 것은 이들 법규 아래에서 수입에 따른 책임부담의 범위를 결정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수하인과 구매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관련거래 및 계약의 내용을 감안 각 케이스 별로 관련법규 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임

5) 수입(물품) 신고(Entry)

일반수입통관의 첫 단계는 수입(물품) 신고로 수입품의 세관구역 밖으로의 반출을 허가받는 절차임. 수입자는 수입품의 항구도착 전 5일부터 사전신고가 가능하고 항구 도착 후 15일 이내에 수입물품 신고를 하여야 함. 수입(물품)통관 신청 서류의 제출시점은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관세율이나 기타 수입관련 법규의 변경은 일반수입통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물품)통관 신청서류의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임

❖ 신고절차와 서류

- 신고서 전송(ABI 를 통한 CBP Form 3461 내용 전송)
- 무서류허가(Paperless Release)
-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CBP Form 3461,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이나 항공증권, 통관본드, 기타 관련서류를 제출함
- 수입 신고시 한미자유무역 협정특혜 청구를 할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세관에 제출할 필요는 없음

❖ 통관 본드(Customs Bond)

- 수입(물품)통관 신청시 수입금액이 2500불이 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통관본드를 제출하여야 함. 통관본드는 세관과 수입자 및 본드발행자의 이에 대한 연대보증 조항을 담고 있음. 일반적으로 통관본드는 결산에 따라 관세부족액의 지급과 사후 법규위반 발견시의 수입물품의 세관구역으로의 반납 등의 수입자의 의무를 정함.
- 통관본드는 수입자가 이들 의무의 불이행시 세관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규모를 미리 약정하고 있음. 세관은 본드 배상금을 다른 벌과금과 함께 병과할 수 있음. 또한 세관은 통관서류상 원산지의 고의적 허위표기에 따른 벌로 수입자로부터 경우에 따라 최고 그 시장가격에 상당하는 민사벌금을 추징할 수도 있음. 본드 배상금은 사적 계약상의 벌금인 반면 민사벌금은 공법상의 벌금임

❖ 한미자유무역 협정 특혜 원산지 증명(U-KFTA Certification)

- 수입(물품)신고시 한미자유무역 협정특혜 청구를 할 경우에 소지할 원산지 증명서는 세관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작성시 유의할 사항과 필수 기재항목은 다음과 같음
 - ▶ 필수 기재항목
 - 수입자의 명칭과 주소
 - 수출자의 명칭과 주소
 -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
 - 수입상품의 명세
 - 수입상품의 분류번호
 - 특혜관세 결정기준
 - 단일 선적상품
 - 복수 선적상품
 - 서명고 서명자의 연락처, 서명일자
 - 증명(보증)
 - ▶ 작성시 유의사항
 - 성분목록과 제조과정에 관한 실제적,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한 후, 적용가능한 모든 분류규정들을 해석, 적용하여 최적의 분류번호를 결정
 - 상기의 분류번호에 적합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에 관한 모든 규정들(예를 들면, GN33(b)(ii)(A)—tariff shift rule; GN33(b)(ii)(B)-regional value content rule; GN33(e)- Deminimis rule; GN33(O)-PSR 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특혜관세 결정기준(Preference criteria)을 결정함(예를 들면, PSR-CC, CTH, CTSH)

- 성분목록과 제조공정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분석한 후 특혜관세 결정 기준(preference criteria)을 해석, 적용하여 수입상품이 특혜관세기준이 정하는 세번변경 요건에 해당거나 역내산 부가가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한국산 특혜관세 원산지를 결정함
 - 서명한 작성자가 오류를 범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짐
- ❖ **억류 및 검사조치(Hold & Exams)** : 세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반출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할 경우 억류 및 검사조치를 취함
- 억류조치 : 선박회사의 적화 명세목록에 입력된 정보에 기초하여 행하는 억류(Manifest Hold)와 특정이슈(즉, 소비자 제품의 안전기준, 저작권이나 상표권에 의한 규제, 정확한 분류 및 평가 등)의 준법여부를 검증하는 통상집행 억류(Commercial Enforcement Hold)등이 있음
 - 검사 방법 : 검사방법으로는 안보검사(비접촉검사 방법, 예를 들면, X-ray 검사등), 농무검역검사(예를 들면, Seal - check, Back-in, or Intensive Exam), 통상집중검사(Intensive Exam)가 있음
 - 검사 목적 : 수입품의 적법성, 법규위반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수입물품을 검사함. 예를 들어 마약 및 상표 등의 모조품의 수입은 당연히 불법이며, 쉐타품목의 경우 쉐타량을 초과하는 수입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통관이 불가능함. 수입품이 합법적 일지라도 원산지를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통관은 허용되지 않음. 한편 물품의 실제내용과 통관신고 서류상에 기재된 내용이 상당한 차이를 갖는 경우 일정 벌을 부과할 수 있음
 - 검사 결과 : 검사에 따라 법규위반이 발견되면 세관은 수입품을 보류하거나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는 곧장, 압류조치 또는 벌금조치를 취하기도 함. 특히 보류조치의 경우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법규위반 사항을 교정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음. 물론 수입자는 검사절차 또는 검사결론 도출상의 오류 또는 법적근거의 부재를 들어 조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구매자에게의 신속한 인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류조치의 정부당성과 관계없이 지적된 법규위반사항을 재빨리 교정하여 재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함. 물론 이와는 별도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함. 조치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법규위반 전력에 따라 향후 통관시 계속적으로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6) 수입(납세) 신고(Entry Summary)

수입품의 통관 후 10일 이내에 수입자는 추정관세를 그에 따른 서류와 함께 세관에 납부하여야 함.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음

❖ 신고절차와 서류

- 납세신고서의 전송(ABI를 통한 CBP Form 7501)
- 무서류허가
-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CBP Form 7501, 추정관세 납부, CBP Form 3461, 상업송장, 포장리스트, 항공이나 선하증권, 기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대부분 품목의 통관이 물품검사가 아닌 서류심사에 의존하므로 상업송장은 통관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임. 특히 상업송장은 세관이 수입물품의 상품분류 및 관세부과 기준액 평가를 위하여 이용하는 기초서류이기 때문에 상품분류 및 관세부과기준액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그리고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함
- 묘사내용의 차이에 따라 상품분류 및 적용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의 내용을 자세히 묘사하여야 함. 또한 해당 수입거래에 관련하여 부담한 또는 부담할 모든 비용요소, 할인액 및 환급액을 기재하여야 함. 수출판매자 및 수입구매자의 이름도 표기하여야 한다. 이들 요구되는 정보들은 관세부과기준액을 산정함에 필요한 정보들임
- 품목에 따라서는 특정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거나 별도의 특별송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 이들 송장기재의무의 불이행은 경우에 따라 민사벌금 등의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이의 이행은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게 영업비밀의 누설 및 서류기재의 번잡성이라는 부담을 주게 됨. 따라서 수입자 또는 수출자는 의무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이들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송장기재내용 : ① 입항지, ② 판매일시, 장소, 판매자, ③ 상품적요, ④ 수량 및 무게, ⑤ 매매가격, ⑥ 각종 발생비용(포장비, 수송비 등), ⑦ 각종 수출품의 할인, 환급, 보조금, ⑧ 원산지, ⑨ 상업송장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외에 지불된 상품이나 서비스

7) 신고 후 절차

- ❖ 사후 정정신고(Post-entry Amendment) : 수입자는 기존 신고행위의 정정을 신청하여 세관의 심사와 결정에 따라 기존 신고행위를 정정할 수 있음
- ❖ 검증 절차(Verifications) : 세관은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제출한 세번, 과세가격, 원산지, 특혜관세 원산지(특혜관세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여 협정국내의 역내제품을 판단), 그리고 기타 신고내용의 관세법규의 준수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CBP Form 28 - 정보요구서(첨부 5참조)를 발부,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요구한 후 심사와 확정절차를 거친후 CBP Form 29 - 결정을 통지하여 확정함
- ❖ 한미자유무역협정 특혜청구의 수입건별 검증(Port Verifications)
 - 검증절차 : 한미자유무역 협정특혜관세 원산지를 확정하기 위한 검증절차도 동일한 서식 CBP Form 28과 CBP Form 29를 사용하여 수입건별로 수입지 관할 지방세관의 수입품 전문 세관공무원이 수입건별로 검증함. 검증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함
 - 검증선정의 기준은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의 준법기록을 근거함
 - CBP Form 28 - 정보요구서를 발부하고,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차 이상의 정보요구서를 발부하여 자료를 수집함
 - 필요시 수입자를 방문하여 검증하거나(including the check of internal control), 혹은 필요시에 수출자, 생산자를 현지방문하여 검증할 수도 있음
 - 상기의 절차를 통하여 수집한 검증자료를 심사하여 CBP Form 29 - 결정통지서를 사용하여 예비결정 혹은 최종결정을 통보함
 - 자료 요청 : 정보요구서(CBP Form 28)를 사용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수입상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자료의 제출이 요구됨
 -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
 - 원재료 목록과 원재료 구매자료, 생산공정자료(하청 계약 생산자료를 포함)
 - 수출한 상품이 해당공장에서 실제로 생산된 상품인지를 입증하는 수출관련 자료
 - 생산공장 프로필
 - 생산공장 기계목록
 - 수출상품의 주문서, 신용장, 대금지급 증빙서류

- 수출상품이 한미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원산지 상품이라고 판단한 특혜관세 원산지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한 설명자료
- 기타 필요한 추가자료
- 입증 자료 제출
 - 수입자는 세관이 요구하면 충분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음
 - 입증자료가 회사 기밀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는 생산자가 세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음
 - 세관이 현장 검증을 통하여 직접 수집함
- 세관의 결정
 - 세관이 부정적 결정을 제안했을 경우, 수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추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기회를 갖음
 - 세관이 부정적 결정을 확정했을 경우, 추가 심사 기회없이 확정대로 정산조치가 되고 수입자는 정산후 18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확정된 부정적 결정은 포괄적 원산지 증명에 표시된 모든 동일한 수입상품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영향을 줌
 - 상습적 허위 또는 무근거 청구로 확정했을 경우, 상품의 추후 수입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특혜청구를 거부당할 수 있음

8) 수입 신고 후 한미자유무역 협정 특혜청구서를 제출하여 납부한 추정관세 반환 요구 (Post-importation preference claim)

- ❖ 신고 후 특혜청구서 제출 : 수입자는 수입후 1년 이내에 신고후 특혜청구서를 일선 지방세관에 제출하여 납부한 추정관세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19 USC 1520(d)}.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청구서 서류는 다음을 포함함
 - 수입신고시 수입물품이 특혜원산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진술서와 수입신고 번호와 수입일자
 - 수입신고시 수입물품이 특혜원산지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로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야함
 - 수입(납세)신고서류 및 기타 관련 서류의 제 3자에게 유출여부에 관한 진술서
 - 상품의 수입신고에 관하여 이의제기, 재정산 요청을 했는지 여부와 요청서류의 명세

❖ 심사와 조치

- 세관은 제출한 청구서류가 수입물품이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에 적합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을 정도로 불충분하면 검증절차의 진행을 유보하고 특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세관은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가 불충분하거나 특혜청구가 법적 청구 요건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고 거부 조치함. 이후 추가 보충서류를 첨부한 재신청을 허용함
- 수입신고의 정산 전, 제출한 특혜청구는 심사, 확정절차를 거친 후, 승인 혹은 거부 조치로 정산결정이 됨
- 수입신고의 정산 후, 제출한 특혜청구는 심사, 확정절차를 거친 후, 승인 조치로 재정산 결정이 됨
- 수입신고의 정산 후, 제출한 특혜청구는 특혜관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는 부정적 원산지 검증이 완료한 후에만 거부 조치될 수 있음
- 수입신고의 정산 후, 세관의 특혜청구의 거부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거부통지의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제출한 이의 제기는 제출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 승인되거나 거부될 수 있음

9) 정산절차(Liquidation)

- ❖ 수입(납세) 신고시 수입자가 납부하는 관세액은 추정관세액으로 추후 정산 절차에 의하여 정산이 이루어짐.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조치의 대상품목인 경우는 수입자는 일반관세와 특별관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함. 특별관세의 추정관세액은 미상무부 국제무역청이 결정한 추정관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 일반관세의 추정액은 수입자가 관세율 및 과세가격을 스스로 추정하여 납부할 수 있음. 물론 수입자의 추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수입(납세) 신고 서류상에 신고의무가 있는 사실 및 이의 진실성에 입각하여야 함

- ❖ 납부한 일반관세 추정액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미세관의 공식입장은 정산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짐. 정산은 수입(납세) 신고 서류상에 신고된 사실 및 제출된 샘플을 토대로 관할 지역세관이 집행함. 한편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추정액의 과다여부는 일차적으로 미상무부 국제 무역청의 연례심사시 결정되고 이 결정을 바탕으로 관할 지역세관은 정산을 하게됨. 일반관세 및 이들 특별관세의 정산은 동시에 이루어짐. 미 상무부국제 무역청의 연례심사는 통상 수입후 몇 년이 지나야 진행되므로 따라서 특별관세조치의 대상품목에 대한 세관의 정산은 그만큼 지연되게 됨
- ❖ 수입자가 납부한 추정액이 세관의 결산금액보다 적을 경우 세관은 수입자에게 그 차액의 납부 의무를 통지함. 한편 그렇지 않은 경우, 세관은 통지없이 정산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수입자는 세관의 정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기한 내에 세관의 재정산을 요구하는 이의제기를 관할세관에 제출할 수 있음(세관이 수입자의 추정관세액을 인정하여 정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이는 수입자 자신이 추정하여 납부한 관세액이 법상 타당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이를 수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함임. 만약 미 관세청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입자는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관세 특별법원인 미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 정산 후 일정기한 내에 수입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 정산은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수입자는 이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한편 확정 후라도 미 세관은 당해 통관과 관련한 수입자의 기만행위를 이유로 재정산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0) 이의 제기(Protest)

- ❖ 대부분의 세관 결정이나 조치에 불복하는 이의제기는 청산일 후 90일에서 180일 이내에 서면상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이의제기서류는 제출한 날로부터 2년 안에 검토되어 여부가 결정됨

4. 원산지 규정

가. 개요

- ❖ 미국정부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원산지 표시 규정은 미국 관세청(U.S. Customs)에서 주관하는 것으로서 FDA에서 관장하고 있는 라벨링(Labeling) 규정과는 별도의 것임
 - 관세법(Tariff Act of 1930 as amended-19 U.S.C§1304(a))에 의해 규정됨
- ❖ 따라서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미국 무역 세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됨

나. 원산지의 정의

- ❖ 이 규정에서 말하는 원산지란 수입되는 물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개조되는 국가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최종 소비자(Ultimate purchaser)가 구입할 때 그 상태의 물품을 의미함

다. 원산지 표시법

- ❖ 국가명 - 원산지(Country of Origin)는 반드시 표준영어로 표기법에 맞는 영어로 된 국가 이름이라야 함. 따라서 한국 상품일 경우, 반드시 Korea를 사용하여야 함(예: Made in Korea, Product of Korea)
- ❖ 표시방법 - 표시방법은 3가지 규칙이 적용
 - 눈에 잘 띄이는 곳에
 - 읽기 쉽게
 - 지워지거나 분실되지 않게
- ❖ 따라서 아주 작은 활자로 포장지 구석에 표시할 경우 원산지 규정법 위반임

라. 원산지 제도

1) 비특혜관세 원산지기준(Non-preference rules of origin)

□ 개요

-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and produced entirely) : 일개국에서 전적으로 경작 등 생산 작업을 하거나, 더 나아가 재료상태에서 제품 상태로 변형시키는 제조 및 가공 공정을 포함하는 전 과정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원산지 판정기준
- ❖ 실질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Rule) : 2개국 이상에서 제조 및 가공한 모든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적용하는 기준.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완제품으로 변형시키는 제조 및 가공공정을 여러 나라에 걸쳐서 작업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및 가공작업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정함. 실질 변형은 사용된 재료와 구별되는 명칭/특성/용도를 가진 새로운 완제품으로 변형되는 것을 의미함
- ❖ 실질변형에 기초한 세번 변경 기준(Tariff shift rule based on substantial transformation) : 모든 섬유 및 의류 제품과 Canada와 Mexico(NAFTA당사국)로부터의 수입한 모든 상품(섬유 및 의류제품은 제외)에 적용되며 세번/상품명세별로 구체적인 실질변형 과정을 상술한 정교한 원산지 판정기준. 각 상품세번의 호와 소호(headings and subheadings of HTSUS)별로 일일이 상품의 생산과정 등을 반영한 구체적 세번변경(tariff shift and other requirements) 요건을 정하고, 이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함
- ❖ 실질변형기준의 해석적용 : 실질적 변형(제조, 가공에 사용한 재료로부터 다른 명칭/특성/용도를 가진 새로운 제품으로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상품별로 한건 한건 개별적으로 검토함. 분류목적 상품명세 확정(establishment of product), 제조 및 가공 공정(manufacturing process)해석 등 복잡한 문제 때문에 기존의 판례와 세관 결정례(유권 해석)를 참조하고, 때로는 직접 세관결정을 신청하여 유권해석을 받음

□ 적용목적별 원산지기준

❖ 최혜국 대우 또는 정상무역관계 대우를 위한 원산지 기준

- 성분법규의 규정은 없지만, 관세법 관세율 규정 {General Note3-rates of duty to the HTSUS(19 USC Sec. 1202)}과 세관의 시행규정 {Section 102.20 and Section 102.21 of CBP regulations(19 CFR Sec. 102.20 and 102.21)} 이 참조됨

- 완전생산기준
- 실질변형 기준
- 실질변형에 기초한 세번변경 기준의 참조 : 모든 섬유 및 의류제품 그리고 Canada와 Mexico(NAFTA의 당사국)의 모든 수입품(섬유 및 의류제품은 제외)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세번변경 기준이 최혜국 혹은 정상무역 대우 목적을 위한 원산지 판단에 참조될 수 있음

❖ 원산지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원산지 기준

- 근거 법규

- 수입상품과 용기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관세법 조항 {Section 1304 -marking of imported articles and containers of the Tariff Act, as amended(19 USC sec. 1304)}
-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시행규정 {Part 134 -country of origin marking of CBP regulations (19 CFR part. 134)}
- 원산지 결정에 관한 시행 규정 { Part 102-rules of origin of CBP regulations (19 CFR part. 102)}

- 원산지 기준

- 완전생산기준 : 일개국에서 기초원자재, 가공원자재, 구성자재로 부터 최종제품으로 생산가공할 때 원산지 표시 목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 실질변형기준 : 여러 나라에 걸쳐서 제조 및 가공한 모든 수입품(모든 섬유 및 의류 제품과 CANADA & MEXICO로 부터의 수입제품은 제외) 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 목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 실질변형에 기초한 세번변경 기준 : 북미 자유무역 협정 (NAFTA) 당사국인 캐나다(Canada)와 멕시코(Mexico)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를 목적으로 적용하는 기준(농산물은 단순히 냉장, 냉동, 열처리 가공했을 때도 경작지가 원산지, 모든 국가로 부터 수입하는 섬유 및 의류제품은

일반적으로 봉제지가 원산지)

- 미소기준(De Minimis Rule) : 모든 국가로 부터 수입하는 섬유 및 의류제품, 그리고 Canada 와Mexico (NAFTA의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제품(섬유 및 의류제품제외)에 관하여 원산지표시를 목적으로 적용하는 보완기준
 - ☞ 원산지역 외에서 생산한 구성재료가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수준 한도 내에서는 최종 상품의 원산지를 인정함. 예를 들면, 22류의 음료/ 주류/ 식초 에는 제품 가치의 10%; 50류부터 63류까지의 섬유및 의류 제품에는 제품 중량의 7%; 모든 제품에는 제품 가치의 7%까지 역외산 재료를 허용함
 - ☞ 미소기준이 적용 되지 않는 상품으로는 1류의 산동물; 2류의 육류; 3류의 어패류; 4류의 낙농품/조란/천연꿀; 7류의 채소류; 8류의 과실; 11류의 곡물의 분과 조분/밀가루/전분; 12류의 채유용 종자/인삼; 15류의 동식물성 유지; 17류의 설탕/과자; 20류의 채소와 과실의 조제품 등임
- 화학적 반응기준 : 28류의 무기화합물; 29류의 유기화합물; 31류의 비료; 32류의 염료/안료/ 페인트/잉크; 38류의 각종 화학 공업 생산품에는 화학적 반응과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함
- 기타 보완 기준 : 포장재; 부속품, 부품, 도구 등에 적용되는 기준과 실질적 변형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정기준(예를 들면, 단순히 물로 희석시키는 공정 등)

❖ 정부 조달과 정부 조달품에 적용하는 원산지 기준

- 근거 법규

- 미국산 우선 구매법의 제1류~제10류{Chapter 1-10 of the Buy American Act of 1933 (41 USC Chapter 1-10)}
- 미국 경기 부양법의 미국산 우선 구매 조항 {Buy American Provision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P.L. 111-5)}
-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of 1996)
- 무역 협정법 제 2511조항~제2518 조항 (Section 2511~Section 2518 of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19 USC Sec. 2511~2518, specifically Sec. 2518 (4)(B)}
- 정부조달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시행규정 제 177.21~제177.31조항 {Government

procurement : Country of origin determination of CBP regulations (19 CFR Sec.177.21)}.

- 정부조달의 개요

- 일반적으로 정부조달시 미국산 제품구매요건을 적용함
- 일반 정부기관에서는 조달시 일정한 조건하에 미국산 제품구매요건을 면제할 수 있음; 미국산 제품이 외국산 제품보다 일정한 가격차이가 있을 경우, 미국산 제품이 질적 혹은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외국산 제품구매가 공공이익을 창출할 경우
- 쌍무간 혹은 다자간 정부조달 협정에 상호대우조건이 합의됐을 경우, 대통령으로 미국산 제품구매요건을 면제할 수 있음

- 원산지 기준

- 정부 조달품에 관하여 “Buy American” 제한조치를 면제할 목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 완전생산기준
- 실질변형기준

2) 특혜관세 원산지기준

□ 개요

특혜관세 원산지규정은 자유무역협정이나 특별무역법에 규정한 특혜관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함. 특히 세번변경기준은 WCO의 통합 상품명세와 부호시스템을 도입, 개정한 관세법의 통합관세율표 규정에 근거함. 세관이 현재 집행하고 있는 각종의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의 근거인 관련법규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음

- ❖ 일반 특혜 관세 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 도서 속령 의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규정(Products of Insular Possessions of the United States)
- ❖ 웨스트 뱅크, 가자 지역 및 기타 해당 산업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규정(Products of the West Bank, the Gaza Strip or Qualifying Industrial Zone)
- ❖ 미-이스라엘 자유무역 협정 이행법(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 ❖ 북미 자유무역 협정 이행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 아프리카 성장 및 개발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 미-카리브 유역 무역 협력법(United States-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 ❖ 중미 자유무역 협정 이행법(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 미-한국 자유무역 협정 이행법(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 미-콜롬비아 무역 진흥 협정 이행법(United States-Colu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 미-파나마 무역 진흥 협정 이행법(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한미 자유무역 협정 특혜관세 원산지 현황

- ❖ 한미 FTA혜택은 인적 교류, 각종의 서비스 분야(법률, 금융, 보건의료, 통신 등)에도 혜택을 주지만 상품 교역에 가장 큰 영향을 줌. 관세 혜택은 품목별 기준으로 즉시철폐가 87%이고 3년내 철폐를 누적하면 91%에 주어짐
- ❖ 한미 FTA 특혜관세 해당요건인 역내산 제품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 중 완전생산기준과 세번변경/부가가치기준 등 일반원칙은 협정문에, 각 상품세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은 부속서에 규정하고 있음
- ❖ 부속서에 규정한 개별적 원산지 기준은 약 5,000여개(HTS 6단위 기준)의 상품의 세번별로 원자재의 가공 및 생산과정,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반영한 정교한 원산지 판정 기준임. 한미 FTA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일반 원산지 기준, 상품세번별 품목별 기준, 기타 보충적 기준)이 관세율표의 통주에 규정되어 있음(GN 33-U-KFTA Implementation of HTSUS)

- ❖ 한미 FTA혜택은 미국의 국내법이 규제하는 수입품의 검역, 위생, 안전, 환경보호 요건등과 타협하지 않음. 예를 들면, 첫째로, APHIS가 PPA, AHPA법규에 의하여 규제하는 동식물 제품의 검역기준, 둘째로, FSIS가 FMIA, PPIA, FEIA법규에 의하여 규제하는 육류와 계란 제품의 검사 및 위생기준, 셋째로, FDA가 FD&CA 법규에 의하여 규제하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 기구, 전자파를 발산하는 전자제품의 위생 및 안전기준, 넷째로, CPSC 가 CPSA, FHSA, FFA, PPPA법규에 의하여 규제하는 소비제품의 안전기준, 다섯째로, EPA가 CAA, FIFRA, TSCA, DWSA법규에 의하여 규제하는 자동차 및 엔진의 배기가스기준, 살충제의 안전기준, 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식수의 위생기준, 여섯째로, NHTSA가 FMVSS법규에 의하여 규제하는 자동차 및 부품의 안전기준 등이 한미FTA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집행됨

□ 한미 자유무역 협정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 ❖ 완전생산 기준 {GN 33(b)(i) of HTSUS - Wholly obtained and produced entirely}과 품목별 기준 {GN 33(o) of HTSUS - Product-specific rules}
 - 기초원자재, 중간원자재,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생산, 가공 공정이 전적으로 역내에서 발생할 경우에 역내산 상품으로 판정하는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 ❖ 세번변경 기준 {GN 33(b)(ii)A of HTSUS - Tariff shift rule}과 품목별 기준 {GN 33(o) of HTSUS - Product-specific rules}
 - 역외산 기초 원자재, 혹은 중간원자재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시키는 역내산 상품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특혜관세원산지 기준{GN 33(ii)A of HTSUS - Tariff shift rule and GN 33(o) of HTSUS -Product-specific rule }.
 - 세번변경기준은 상품 분류 절차를 거쳐 상품분류번호를 결정하고, 상품분류번호별로 명시한 세번변경기준, 즉 역외산 원자재, 부품, 구성품 상태에서부터 최종제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기준으로, 류의 변경 {Change of Chapter(C C)}, 호의 변경{Change of Tariff Heading(CTH)} 소호의 변경{Change of Tariff Subheading(CTSH)}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 ❖ 역내산 원자재만 사용한 가공생산 기준(GN33(b)(iii) of HTSUS)과 품목별 기준 {GN 33(o) of HTSUS - Product specific rules}
 - 역외산 기초 원자재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생산, 가공하여 역내산 중간 원자재를 만들고 더 나아가 최종 제품까지 만들었을 경우 최종상품이 역내산 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특혜관세원산지 기준임
- ❖ 미소기준(De minimis Rule) {GN 33(e) of HTSUS} : 역외산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가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품 가격의 10%(섬유와 의류제품 가격의 7%)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임(GN 33(e)-De minimis rule of HTSUS)
 - 미소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 일부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미소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미소기준은 혼합과 같은 단순공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 부적용 품목의 예;
 - ☞ 3류의 어류제품
 - ☞ 4류의 낙농제품
 - ☞ 7류의 채소류
 - ☞ 1006 호와 11류의 쌀제품
 - ☞ 0805 호와 2009.11-39소호의 감귤류, 주스류
 - ☞ 8류와 20류의 복숭아, 배, 살구류
 - ☞ 15류의 동식물성 유지
 - ☞ 17류의 설탕
- ❖ 누적기준(Accumulation Rule) {GN 33(f) of HTSUS} : 역내산(미국산 및 한국산) 원부자재의 교역활성화를 위하여, 일국가의 원부자재가 상대방 당사국의 상품에 결합되고, 기타 관련 특혜관세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함
- ❖ 대체가능재료 및 물품에 관한 기준(Fungible Goods and Materials Rule) {GN 33(j) of HTSUS} : 대체 가능 재료나 물품은 성질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료나 물품으로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식을 도입함(GN 33(j)- Fungible goods or materials rule of HTSUS)

- 선입 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먼저 구입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후입 선출법은 나중에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나중에 구입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 세트 포장한 제품에 관한 기준(Products packed in a set for retail sale Rule) {GN 33(n)(iv) of HTSUS} : 수입품이 해석의 총칙 3항 {GRI of HTSUS, Article 3}을 적용한 결과 세트 포장한 제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세트 포장된 각각 제품이 역내산 제품이어야만 세트 포장한 제품이 특혜 원산지 제품이 됨.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트 포장된 역외산 제품의 추가치가 그 세트 포장한 제품의 조정가치의 15%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 세트 포장한 제품도 특혜 원산지 제품이 될 수 있음
- ❖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에 관한 기준(Accessories, spare parts or tools) {GN 33(i) of HTSUS} : 세번변경 규정 적용시 고려대상이 아님, 역내 부가가치 기준 적용시 고려대상임
- ❖ 소매용 포장재와 용기에 관한 기준(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GN 33(k)(i) of HTSUS} : 세번변경 규정 적용시 고려대상이 아님, 역내 부가가치 기준 적용시 고려대상임
- ❖ 선적 포장재와 용기에 관한 기준(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 {GN 33(k)(ii) of HTSUS} : 세번변경 규정 적용시 고려대상이 아님, 역내 부가가치 기준 적용시 고려대상임
- ❖ 간접재료에 관한 기준(Indirect materials) {GN 33(l) of HTSUS}
 - 수입품의 생산에 사용했지만, 제품 속에 혼합되지(incorporated) 않은 재료로서 fuel, tools, dies and mold, spare parts, lubricants, safety equipments, testing equipments, catalysts 등
 - 원산지 규정(세번변경기준, 혹은 역내가치 포함기준)을 적용시 고려대상이 아님
- ❖ 직접 운송에 관한 기준(Transit and transshipment): {GN(c)(iii) HTSUS} : 역외에서 추가 공정과정, 그리고 보존을 위한 조치 또는 수송에 부수하는 작업(짐을 싣거나 하역하는 행위)이외의 공정은 허용되지 않음

□ 한미 자유무역 협정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적용사례

- ❖ 신선 농축수산물은 특혜관세 원산지 규정의 완전생산기준에 근접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함
 - 화훼, 채소, 과실, 곡물류는 역내에서 재배하고 수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작지 기준
 - 닭고기는 사육과 도축을 행하는 완전생산기준
 - 기타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등)는 역외산 생축을 수입해 도축한 경우를 인정하는 도축국 기준
 - 쇠고기는 도축국 기준을 적용해도 위생, 검역조건에 의해 캐나다산 생우를 미국에서 도축한 경우 수입이 금지, 멕시코산 생우는 미국내에서 100일 이상 사육 후 도축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육국 기준과 동일
 - 원산지기준은 수입가능성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협정문에 명시함으로써 위생, 검역 조건을 우회한 수입 우려 해소
- ❖ 가공 농산물 중 민감한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특혜관세 원산지 규정의 세번변경 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적용함
 - 역외국가에서 수입한 쌀을 제분한 쌀가루, 또는 쌀가루가 들어간 가공 식품, 찌쌀은 세번변경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역내산 제품으로 불인정
 - 역외국가에서 수입한 인삼 제품은 특혜관세 원산지 규정의 세번변경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신선 및 건조 인삼근(절단되었거나 분쇄된 것도 포함): 소호 제1211.20.00(Sub-heading 1211.20.00 of HTSUS)
 - 인삼근 엑기스 : 소호 제1302.19.40(Sub-heading 1302.19.40 of HTSUS)
 - 인삼근 재료를 사용한 식품(인삼차, 인삼환, 인삼과낙스 등): 소호 제2106. 90.99 (Subheading 2106.90.99 of HTSUS)
 - 품목별 특혜관세 원산지규정의 세번변경기준과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관한 요약과 해석/적용

➤ 요약

- ☞ 역외국에서 수입한 신선 및 건조 인삼근은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역외국에서 수입한 인삼근에서 추출한 엑기스를 신선 및 건조 인삼근은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역외국에서 수입한 인삼근과 인삼근에서 추출한 엑기스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인삼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역내산 인삼제품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석/적용

- ☞ 신선 및 건조 인삼근(절단되었거나 분쇄된 것도 포함)은 류의 변경을 요구함 {{Change of Chapter(CC): a change to 1201-1214 from any other chapter of HTSUS)}
- ☞ 인삼근 엑기스는 류의 변경을 요구함. 단, 신선 및 건조 인삼근(Sub-heading 1211.20)으로 부터의 변경은 예외임 {Change of Chapter(CC): a change to subheading 1302.19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subheading 1211.20.of HTSUS}
- ☞ 인삼근과 인삼근에서 추출한 엑기스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만든 인삼제품은 호의 변경을 요구함. 단 신선 및 건조인삼근(Sub-heading 1211.20)과 인삼근에서 추출한 엑기스로부터의 변경은 예외임 {Change of Tariff Heading (CTH): a change to ginseng preparations of subheading 2106.90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subheading 1211.20 and 1302.19}.

❖ 역외국가에서 수입한 과일, 견과류, 채소류를 냉동하거나 염수 등에 저장, 처리하거나 또는 구운 방법으로 단순 가공한 경우는 세번변경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역내산 제품으로 불인정

마. 구비서류

- ❖ FTA 수입통관 시에는 수입상품의 품목번호, FTA 관세혜택 등을 확인하고 수입허가증, 원산지증빙서류를 준비해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며, 수입 및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함
- ❖ 수입통관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함
- ❖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발급방식	자율발급
발급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증명서식	한국정부 권고서식
유효기간	4년
사용언어	영어, 한글

※ 미국 세관에서는 경우에 따라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과 제조과정 확인을 위한 제조회사 진술확인서(Manufacturer's Affidavit)을 요구할 경우도 있음

1. 배

- ❖ 수출단지 지정 및 승인이 필요
- ❖ 승인된 봉지로 씌운 후 재배되어야 함
- ❖ 재배지 검사 실시
 - 봉지를 씌운 직후: 한국 식물검역관 단독검사
 - 수확기: 한국과 미국의 식물검역관 공동검사
- ❖ 수확된 과실에 대한 한·미 식물검역관의 합동검사 실시 후 한국의 식물 검역증 및 미국의 대외식물검역증이 첨부되어야 함

2. 사과

- ❖ 한국에서 1.1℃에서 40일간 저온처리 후 미국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MB훈증(48g/m³/10℃ 이상/12시간 등)처리를 해야 함
- ❖ 한국의 식물검역소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을 첨부해야함

3. 감귤

- ❖ 수출단지 지정 및 승인이 필요
- ❖ 한·미 식물검역관에 의한 공동 재배지검사 실시
 - 낙화 후 검사는 신규지역 지정시에만 공동검사
- ❖ 생육기간 중 감귤 궤양병 검정을 위한 박테리오파아지테스트 실시
- ❖ 수확된 과실에 대한 한·미 식물검역관의 합동검사 실시

- ❖ 위생증 부기사항 : 여기 선적된 한국산 과실은 감귤궤양병에 감염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믿어지며, 미연방법규(CFR)319.28조 및 319.56조에 APHIS측이 명시한 모든 요건에 부합됨
- ❖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연방 식료품, 의약품 및 화장품 조례 408조(FFDCA-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s Act)에 의해 설정한 만코제브(mancozeb)잔류기준인 10ppm을 지켜야함

4. 식물의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수입하는 경우

- ❖ 채소에 뿌리(root)가 있는 경우 식용채소(edible vegetable)에서 Live trees and other plants(산수목 및 기타 산식물)로 분류될 수 있음
 - 산수목 및 기타 산식물은 식용목적이 아닌 미국에서 재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되어 수입이 까다로움
- ❖ 채소(vegetable)는 먹는 부위에 따라 꽃, 잎, 줄기, 뿌리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미 농무부가 관할하는 PPQ(Plant Protection & Quarantine, 식물 보호 및 격리) 규정상 신선채소류 수입허가 후 수입 가능한 품목의 지정된 부위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함
 - 마늘(구경), 상치(잎), 더덕(뿌리) 등으로 지정되며, 지정된 이외의 부위가 포함될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 새송이버섯의 경우 장기간 수송에 따른 품위유지를 위해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수출을 원하지만, 이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5. 건강보조식품

- ❖ 미국에서의 보조식품에 대한 정의는 1994년에 제정된 식품보조제품 건강 및 교육법(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 이하 “DSHEA”로 표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식품이란 일상적인 섭취식품의 영양소를 보완하기 위한 식이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말함
- ❖ ‘94년 제정된 DSHEA이 규정하고 있는 보조식품 성분으로는
 - 비타민(Vitamin)
 - 미네랄(Mineral)

- 허브 또는 기타 식물성 생약(Herb or other botanical)
 - 아미노산(Amino acid)
 - 식품대체성분(Dietary substance for use by man to supplement the diet by increasing the total dietary intake)
 - 엑기스(concentrate, metabolite, constituent, extract) 등이 있으며 그 형태 또한 정제, 연질캡슐, 액체, 파우더 등으로 다양한 편임
- ❖ 건강보조식품은 외형상 약품과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표기나 광고를 해서 안 됨. ‘식품’의 범주에 속해 있어 약품과 달리 사실상 판매전 미 식약청(FDA)의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검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1994년 10월 15일 이후에 개발되어 사용하기 시작한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FDA에 신고절차를 거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음
 - ❖ 상기에 열거된 일반적인 성분이 아닌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보조식품을 미국에 판매하고자 할 시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는 그 성분이 현재 일반적인 식품성분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일 경우 그 성분이 식용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FDA에 증명하여야 함
 - ❖ DSHEA에 의하면 약품 및 식품첨가물과 달리 보조식품의 경우 판매전 안전증명을 요구하는 법률적 조항은 없으나 제조업체는 여전히 제품의 안전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제품에 관련된 불만사항 및 문제를 접수할 경우 소비자안전을 위한 빠른 조치를 위해 이에 대한 기록과 조사 자료를 FDA가 요구시 제출해야 함
 - ❖ 라벨링 표기 주의사항 : FDA는 건강보조식품의 포장에 반드시 표기해야 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품명에 보조제 “Supplement”라는 것을 표시할 것, 제조업자와 포장회사 또는 유통회사의 회사명과 주소, 전체 성분 표시, 제품의 실중량 표시이며 보조제품은 영양표시를 “Supplement Facts”란 또는 “other ingredient”란에 각각의 모든 성분을 표기하여야 됨
 - 기타 등등 이란 표기는 불가함
 - ❖ 제품의 일일권장량(섭취량)은 제조업자가 각 성분의 안전을 고려해서 결정하며 FDA의 검토나 허가사항은 아님
 - ❖ 제품의 효능표기시 주의점 : 법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의 제조업자는 제품 홍보시 ① 건강적 측면, ② 기능적 측면, ③ 영양성분 측면의 세 가지 내용을 강조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제품성분과 질병과의 상관관계 또는 건강과 관련된 성분의 조건, 제품 사용시 의도된 효과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나 식품대체성분의 중량 등이 있음

- 건강적 측면 - 제품에 칼슘성분이 있을 경우 ‘칼슘섭취는 골다공증 발생위험을 감소시키는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문구를 표기할 수 있음
- 구조/기능적 측면 - 영양소 결핍에 따른 질병언급(비타민 C 부족시 괴혈병 등) 및 영양소의 기능적 효과(항산화제의 세포활성기능 또는 칼슘의 골형성기능)
- 영양성분 측면 -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정도를 FDA에 규정된 “Good source”, “High”, “Free”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음(제품이 Fat-free라고 표시하려면 일회섭취량에 지방성분이 0.5g이하로 함유될 것)
- ❖ 제품의 표시나 홍보문구 중 특정 질병이나 증상의 치료, 예방을 언급하는 것은 허가 받지 않은 약품과 같이 불법이며 법적으로 허용된 보조제품성분의 인체에 대한 구조/기능적 영향을 강조할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FDA로부터 평가, 인정받은 것이 아니며 제품이 어떠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됨
- ❖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한 대부분의 소비자 구매제품의 광고홍보는 연방 무역 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FDA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6. 저산성 식품 및 산성화 식품

- ❖ 열처리 및 진공포장된 식품으로 소매점에서 상온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으로, 중독성 물질과 유해 박테리아(Botulism) 발생가능성이 있는 식품임
- 저산성식품(LACF: Low-acid Canned Food): 열가공후 밀봉용기(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에 포장된 pH가 4.6이상, 수분활성도가 0.85 이상인 식품으로 주스, 참치통조림 등이 해당됨
- 산성식품(AF: Acidified Food): 수분활성도가 0.85 이상이 저산성식품에 산 등을 첨가하여 pH가 4.6이하로 조절한 식품으로 피클, 절임류 등이 해당됨

❖ 유의사항

- 미국으로 통조림 제품 같은 저산성식품과 산성식품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미국 FDA에 제조시설을 등록하고, 제조공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FDA에서는 서류검사를 통해 등록업체에 FCE(Food Canning Established Number, 제조시설등록번호)를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조사가 쉽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
- FCE는 수입허가가 아니며, 단순한 수입자격 요건으로 수입통관시 FDA 검사에 대비해야 됨

7. 캔디류

- ❖ 식품첨가물은 품질(맛, 색택 등)의 향상 또는 보존을 위해서 식품의 생산, 가공, 포장, 운송 및 저장시 첨가되는 물질로 미국 FDA에 의해 승인된 것만 사용 가능
 -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FDA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동물실험 등을 통해서 인체에 해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
 - 승인된 첨가물에 대해 FDA는 사용이 가능한 식품종류, 최대사용량 및 라벨표기법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함
- ❖ 색소첨가물은 식품첨가물의 일종으로 식품, 의약품 또는 화장품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염료와 색소로 천연색소와 인공색소로 구분됨
 - 인공색소는 FDA의 승인이 필요하며, 식품에 사용하였을 경우 포장용기에 색소명을 영문으로 성분표시를 해야 함

1. HACCP프로그램

-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은 생산, 제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위생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임
- ❖ 특별히 수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지침서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음
 - Part 123-fish and fishery products of FDA regulations(21 CFR part 123) 어류 및 어류생산물에 관한 FDA규정(미연방규정집 123부 21)
 - Fish & Fishery Products Hazard and Controls Guidance: 4th edition, Nov. 11 어류 및 어류생산물 위해요소 관리지침(2011.11 제4판)

2. 식품위해요소

- ❖ 식중독 병원체 위해요소(Foodborne Pathogens)
 - 병원성 세균(Pathogenic Bacteria)
 - 살모넬라균 종
 - 리스테리아
 -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 캄필로박터
 - 비브리오 콜레라
 - 장염 불니피쿠스균
 - 연쇄상 구균 및 기타
 - 대장균군(EEC Group) : 황원형 O17:H7(E-Coli O157:H7)
 - 기생충(Parasites)

- 바이러스(Virus)
 - A형 간염 바이러스
 - E형 간염 바이러스 등
- 곰팡이(Fungi)

❖ 화학적 위해요소(Cheical Contaminants)

-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
- 다이옥신(Dioxins and PCBs)
- 우레탄 / 에틸카바메이트(Urethane / Ethyl carbamate)
- 퓨란(Furon)
- 멜라민(Melamine)
- 과염소산염(Perchlorate)
- 방사성핵종(Radionuclide)
 - 아이오딘/요오드(Iodine)-131
 - 세슘(Cesium)-134 + 세슘(Cesium) 137
 - 스트론튬(Strontium)-90
 - 플루토늄 (Plutonium)-238 + 플루토늄 (Plutonium)-239 + 아메리슘 (Americium)-241과 기타

❖ 중금속 위해요소(Metals)

- 비소(Arsenic)
- 납(Lead)
- 수은(Mercury / Methyl mercury) & etc.

❖ 독소(Natural Toxins)

- 어패류 독소
- 아플라톡신
- 버섯 독소
- 테트로도톡신
- 스킴브로이드 중독(스킴브로톡신, 히스타민) 및 등

❖ 살충제 잔류(Pesticides residue)

- PART 180 of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국가간 경제협력 방안 규정) regulations(40 CFR PART 180):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식품에 포함될 수 있는 살충제 잔류의 허용량을 자세히 규정하고, FDA는 잔류허용량을 초과한 식품은 불량식품으로 간주하여 수입거부 조치를 함
- 카르벤다짐
- 마노코젯
- 이산화황 외 기타

❖ 동물 항생제 잔류(Animal medicine residue)

❖ 식품 알레르기(Food allergy)

-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Food allergens)
 - 대두
 - 땅콩
 - 견과류
 - 생선
 - 갑각류
 - 계란
 - 우유가 들어간 식품
- 상기 물질은 식품 라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함

❖ 식품첨가제와 색소첨가제(Food additives & color additives)

- 식품을 보존, 향미, 혼합, 농화, 채색시키고 영양결핍증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이 첨가제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맛있고, 영양이 풍부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고, 다채롭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식품을 만들어 줌
- FDA는 위생안전 확보를 위하여 첨가제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규제, 정밀검사를 철저하게 행하며, 규정을 통해서 식품에 사용되기 전에 위생안전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요구함
- 추가로 모든 첨가제는 과학적인 실험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위생안전 심사를 받아야 함

3. 해외 수출업체 FDA 등록

-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발효(2011.1.4.)에 따라 2012년부터 식품업체(해외 수출업체 포함), 미국 FDA에 식품시설 정보를 2년마다 갱신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식품시설등록은 미국 내 시설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업체들의 인간 또는 동물이 소비하는 모든 식품(사료 포함)에 관련한 제조, 가공, 포장, 저장 시설 모두 의무등록사항이며 매 짝수 해마다 등록된 식품시설을 재등록(의무적으로 등록내용 갱신)
 - 등록기간 : 짝수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등록대상 : 모든 해외 식품수출업체
 - FDA의 식품시설 재등록은 잠재적 혹은 실질적 생체 테러 위험, 식품매개질환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FDA로부터 해당 식품시설의 자료를 활용,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식품시설에 신속히 통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 식품시설 재등록은 FDA의 웹사이트에서 기존 계정(Account ID)로 로그인하여 업체 관계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기존 계정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식품시설 재등록은 대미식품수출의 필수적인 사항인 만큼 관련업체들이 기한내 차질 없이 재등록을 마칠 수 있어야 함

제 3 장 검역제도

제 1 절

검역제도 일반

1. 검역절차

- 가. 수입허가증신청(수입상 → 농무부 동식물 검역국)
- 나. 수입허가(동식물 검역국 → 수입상)
- 다. 도착통지서(수입상 → 부두/공항검역소[CBP])
- 라. 도착통지서 전달/유통경로 통보(부두/공항검역소[CBP] → 동식물 검역국)
- 마. 검역절차사항통보(부두/공항검역소[CBP] → 수입상)
- 바. 검역(CBP농산물 서비스)
- 사. 통관(CBP)

2. 검역기관

❖ 미국에서 동식물의 검역 및 식품위생에 대한 업무는 농무성 산하의 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에서 담당하고 있음

❖ 주요업무

- 항만이나 국경선을 통한 외국 농산물의 해충과 질병 유입방지
- 유해 외국 농산물의 국내 반입에 따른 긴급조치 및 해소
- 국내의 동식물 질병에 관한 모니터링 및 결함 해결
- 국내의 가축질병과 식물 해충의 퇴치
- 과학적인 식물위생 규격 설정에 의한 농산물 수출 촉진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천연자원, 국민보건 및 안전에 대한 피해 예방
- 생명공학 및 유전자 조작기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 검증

품목별 검역제도

1. 식물검역

가. 관련법 체계

- ❖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법은 식물검역법(Plant Quarantine Act)이며 구체적인 수입규제에 관한 사항은 해외검역공고, 법령 등을 통하여 규정됨

나. 식물검역법

- ❖ 묘목(Nursery stock)의 경우 농무성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이 미첨부된 경우에는 수입불가(제1조)
 - 묘목: 야외에서 재배된 화훼묘목(Florist's stock), 교목(Tree), 관목(Shrub), 덩굴(Vine), 삽수(Cutting), 대목(Graft), 접수(Scion), 접아(Bud), 과수 및 관상수목의 핵자 및 종자 기타 번식용 식물 및 식물성 산물(제6조)
 - 다음의 것은 묘목에서 제외됨: 목초종자, 채소종자, 화훼종자, 화단용식물, 기타 초본식물, 구근(Bulb), 뿌리(제6조)
- ❖ 상기 묘목이외의 식물류가 수입됨으로써 유해식물 병충해의 유입우려가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공포함(제5조)
 - 이때는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 및 해당 국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결정을 하기 전에 공고 및 입법예고(public hearing)과정을 거쳐야 함

- ❖ 미국에 분포하지 않거나 널리 분포하고 있지 않은 나무, 식물, 과실의 병이나 또는 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묘목이나 기타 식물에 대하여 병해충 발생국가로부터의 수입금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공포함(제7조)
 - 공고과정은 제5조의 내용과 동일
- ❖ 본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칙(Rule), 규정(Regulation)을 제정 공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농무성 장관에게 위임(제9조)

2. 동물검역

가. 위생검사제도(육류검사법)

- ❖ 육류 및 가금육의 위생과 안전검사를 위해서 미국 식품안전국(FSIS)의 검사요원이 미국 전역의 6,200개에 달하는 도살장 및 육류가공공장에 상주하면서 현행 법률에 의하여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검사시 중점을 두고 있는 규칙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모든 도축장과 육류 가공공장은 자체 생산제품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HACCP로 불리는 Process Control 시스템을 채택하고 이행해야 함
 - 모든 도축장은 유해 미생물의 1차적 오염원인인 배설물로 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자신들의 공정관리 시스템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해 E. Coli균속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실시해야 함
 - 모든 육류 처리공장은 최종제품이 유해 미생물로 부터 오염이 감소된 위생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문서화된 표준작업공정(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을 개발 하고 이행해야 함

3. 유제품검역

가. 검역제도 일반

- ❖ 검역조건 : 함유량의 관계없이 미농무성 산하의 동물검역소의 허가를 받아야 됨
- ❖ 밀크라 함은 전유 혹은 탈지유(일부 혹은 완전탈지한 것)를 말함. 밀크제품은 밀크에서 얻어지는 제품으로 농축유(Evaporated milk, condensed milk, dry milk), 당분이 들어 있는 밀크, 버터, 치즈, 숙성밀크 등임
- ❖ 낙농품류 : 미국 수출입 종합편람 제4류(낙농품)의 소호주(additional US notes)와 밀크를 원료로 만들어진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 2202. 90. 10 ~ 2202. 90. 28로 표현되는 밀크가 일부 포함된 제품을 의미함. 여기에는 밀크류 혹은 크림으로(흰초콜릿과 비식용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 유지방 중량이 제품의 5.5%이상인 되는 제품 즉, 상업용으로 생산되는 제품(제18류 소호주 2와 소호주 3에 나온 수입쿼터제외)임 ; 건조밀크, 유장, 혹은 버터밀크로(0402.10, 0402.21, 0403.90, 0404.10) 단일 재료와 혼합한 재료의 유지방중량이 5.5%이하인 제품으로 보통 다른 재료들과 혼합되는 제품이나 설탕첨가 여부를 불문; 유지방을 첨가한 제품으로 전체중량의 응고유가 16%이상 들어있어 차후 가공을 위하여나 직접소비제품이 아닐 경우임
- ❖ 제외 : 식료품가운데 밀크 혹은 밀크제품의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소량포함(예를 들어 건조밀크-밀크지방건조 그리고 밀크비유지방건조물이 평균5%미만) 혹은 지금까지 직접소비제품으로 밀크식품산업역사에서 낙농품으로 여겨지지 않을 경우라고 할 수 있음
 - 예: Sugar confectionary, non-sugar confectionary로 빵, 비스킷, 스낵, 전병, 와플과 같은 제품으로 한국 수의과학검역원에서 Health Certificate이나 미국 내 동식물검역소 산하의 동물검역소(V/S)에서 수입허가(Import Permit)을 받을 필요는 없음
- ❖ CBP(국토안보부) 통과요건 : 요구르트는 종류에 따라 쿼터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음

나. VS/APHIS 검역요건

❖ 관련규정

- Animal health protection act(7USC Ch.109)
- VS/APHIS regulations(9CFR Part-94)
- Animal Product Manual

❖ Import Permit VS 16-3 필요

- 밀크가 조금이라도 함유된 모든 제품은 즉 낙농품 혹은 비낙농품이라고 해도(설탕이 들어간 제과나 비캔디제과 제외) Veterinary Service(VS)의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함

다. FAS 검역요건

❖ 일부 요구르트, 요구르트류, 요구르트드링크는 수입쿼터에 제한이 있음

❖ 수입라이선스 불필요

라. FDA 검역요건

❖ 관련규정

- Federal Import Milk Act(FIMA:21 USC Ch.4, Subchapter IV)
- FDA REgulations(21 CFR Part131-Milk and cream and part 1210- FIMA regulations)
- Food, Drug, and Cosmetic Act(21 USC Ch.9)
- Compliance Policy GuideCompliance Policy Guide

❖ FIMA Import Permit은 불필요

제 4 장 라벨링제도

제 1 절

라벨링제도 일반

1. 식품표시 제도

- ❖ FDA가 관할하며, 식품명, 내용물의 실중량, 원재료명, 영양분석표 등을 주 표시면(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통상 보이는 면)이나 정보표시(주 표시면의 바로 오른쪽)에 기재
- ❖ 식품표시제도의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조항이 있음
 - 원재료표시: 이 조항은 2개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신선 농산물의 경우 그 자체가 하나의 성분을 이루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 영양분석표: 영양분석표 면제 대상으로 포장표기를 할 필요가 없으나 주요 식품의 경우 구매시점(소매점)에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진열대 별도표기 권장

2. 영양분석표시

- ❖ '90년부터 Nutrition Labelling and Education Act(영양표시 및 교육법)에 의해 시작된 조치로서 미국 내 판매되는 모든 가공식품류에는 상세한 영양분석표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 이 조치는 우리 농식품 수출에 두 가지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음
- ❖ 주정부에 따라서는 연방 식품의약국에서 요구하는 그 이상의 성분분석표를 요구하기도 하며, 이러한 특별 요구사항은 지방정부와 품목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에 따라 특별한 조사가 요구됨

- ❖ 지방정부에서 FDA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세분화된 영양 분석표를 요구할 수도 있고, 식품제조 과정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음
- ❖ 미 정부에서는 영양분석표가 미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 3의 검사기관(식품 제조회사와 관계없는 제 3의 기관)에서 작성되었다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요구함
- ❖ 증빙서류가 미흡하거나 부실할 경우, 미 정부에서는 문제의 식품을 다시 시험하고 새로운 증빙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얼마든지 반복 요구할 수 있음
- ❖ 가공식품의 경우 수출 전 미국 내에서 허가된 검사기관으로부터(이런 검사기관들은 주로 미국 내에 있음) 식품검사와 영양분석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미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함

3. 특징

- ❖ 식품라벨링 규정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위생 및 건강관리를 위해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라벨을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하게 식품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음. 허위정보를 표시할 경우에는 부정 표시식품(Misbranded Food)로 간주하여 수입이 금지됨. 그러나 라벨링 규정에 맞도록 개선된다면 수입이 허용 될 수 있음

4. 기본표기사항

- ❖ 식품의 명칭은 통상적인 명칭을 사용해 표기하며 포장용기의 주표시면에 표기해야 하고 활자의 크기는 주표시면에 사용된 가장 큰 활자의 절반 크기 이상이 되어야 함
- ❖ 순중량의 표시는 주요면 하단 30%위치에 표시하고 미국단위와 미터법단위로 함께 표시해야 함. 제조자, 포장자, 유통자의 명칭과 주소는 성분표시면과 같은 면에 기재해야 하며 예외가 없는 한 완전한 주소를 표시해야 함
- ❖ 성분표시는 라벨의 표시면, 측면 혹은 후면의 정보표시면에 표기할 수 있으나 제조자, 포장자 혹은 유통자와 같은 면에 표시해야 함. 성분의 목록순서는 중량이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것의 순으로 하고 통상명칭으로 기재해야 함. 또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성분도 반드시 표시해야만 함

5. 일반표기사항

- ❖ 라벨표시사항(Label statements)은 주표시면(principle display pannel ;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통상 보이는 면)이나 정보표시(Information pannel ; 주표시면의 바로 오른쪽)에 기재함
- ❖ 주 표시면에는 식품명과 실중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 ❖ 정보표시면에는 주 표시면에 기재되지 않은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 원재료명과 영양표시 등과 같은 사항들을 표기함

6. 식품명(Statement of identity) 표기

- ❖ 식품명은 반드시 주 표시면에 표기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표시면의 인쇄 중 가장 큰 것의 1/2 이상의 크기이어야 함
- ❖ 식품이 일반적, 통상적 이름을 갖는 경우 이를 식품명으로 사용하며 일반적, 통상적 이름이 없을 경우에는 그 식품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이름을 사용하여 제품을 잘못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 식품명은 포장의 바닥과 평행하게 쓰여져야 함
- ❖ 식품명표기는 포장된 식품이 액체가 아닐 경우 ‘가늘게 썰어진 것인지(sliced)’ ‘썰지 않은 것인지(unsliced)’ ‘반으로 잘라진 것인지(halves)’ 등의 식품형태를 명시해야 함
- ❖ 어떤 신제품이 기존에 있던 식품과 유사하며 기존 식품의 대체재로 사용될 때, 만약 그 신제품이 기존의 것보다 필수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함량이 낮다면 신제품에는 ‘모방’(imitation)이라는 표시를 해야 함
- ❖ ‘모방’(imitation)이라는 표기는 식품명과 같은 글자 크기와 선명도로 표시
- ❖ 과일이나 야채의 그림, 맛이나 외관, 라벨표기 등으로 소비자가 주스를 함유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음료는 주스(과일이나 야채의 천연즙)의 함량을 %로 표기해야 함

- ❖ 아래와 같이 향미(flavor)를 위해 소량의 주스가 함유된 음료에는 주스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됨
 - 제품에 ‘향미’(flavor) 또는 ‘향미의’(flavored) 라는 용어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 ‘주스’라는 용어가 원재료명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은 경우
 - 어떤 방법으로든 주스가 함유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경우
- ❖ 100% 주스로 만들어진 음료의 경우는 ‘주스’라고 표시할 수 있으나 100% 미만으로 희석된 음료는 음료, 드링크, 칵테일의 의미를 갖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또는 ‘희석(diluted) ____ 주스’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음

7. 내용물의 실중량(Net Quantity of Contents) 표기

- ❖ 내용물의 실중량이란 포장재나 용기 안에 담겨있는 식품의 양을 가리키는 라벨의 표시 사항임
- ❖ 내용물의 실중량은 별도 항목으로서 주표시면의 밑부분 30%이내에서 포장의 바닥면과 평행으로 쓰여져야 함
- ❖ 내용물의 중량은 미터법(grams, kilograms, milliliters, liters)과 미국 통상단위법(ounces, pounds, fluid ounces)에 따라 두가지로 표기되어야 함
- ❖ 미터법 표기 위치는 미국통상단위법 문구 위치의 앞, 뒤, 위, 아래 모두 가능함
예) Net wt 1 lb 8 oz(680g)
- ❖ 내용물의 실중량이란 용기나 포장 안의 식품의 실중량만을 포함하며 용기나 포장지, 포장재의 무게는 포함되지 않음. 실중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채운 용기의 평균무게에서 빈포장용기, 뚜껑, 포장지의 평균무게를 뺄 것
- ❖ 일반적으로 용기안의 식품에 부가된 물이나 다른 액체는 실중량 표시에 포함됨

8. 원재료명 목록(Ingredient list) 표기

- ❖ 원재료명 목록(Ingredient list)이란 식품에 사용된 각각의 원재료를 주된 것부터 내림차순(중량이 가장 많은 것부터 가장 적은 것의 순서로 쓰는 방식)으로 나열한 것을 말함
- ❖ 원재료명 목록은 식품명,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주소 등이 있는 면(주표시면이나 정보표시면)과 같은 면에 있어야 하고 영양표시,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 주소의 앞이나 뒤에 표시할 수 있음
- ❖ 원재료명은 규정에 다른 용어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반적, 통상 이름을 사용예) 과학용어인 ‘sucrose’ 대신 ‘sugar’를 사용함.
- ❖ 허가된 방부제(preservative)를 식품에 첨가할 경우 원재료명에 그 방부제의 일반적 또는 통상적 명칭을 기재하고 아래의 예처럼 방부제의 기능을 명시해야 함
 - 예) ‘방부의’(preservative), ‘부패지연’(to retard spoilage), ‘곰팡이방지’(mold inhibitor), ‘향미보호’(to help protect flavor) ‘색상 유지증진’(to promote color retention)
- ❖ 향신료(spices), 천연착향료(natural flavors), 인공착향료(artificial flavors)는 원재료명 목록에 특정한 일반적, 통상적 이름을 기재하거나 ‘향신료(spices)’ ‘천연착향료(natural flavors)’ ‘인공착향료(artificial flavors)’라고 표시할 수 있음
- ❖ 파프리카(Paprica), 튜메린(Tumeric), 샤프론(Saffron) 등 색소로도 사용되는 향신료는 ‘파프리카’와 같이 실제 이름을 기재하거나 ‘향신료와 색소’라는 용어로 표시함
- ❖ 색소의 표기는 공인된 색소의 경우 약어 또는 특정 이름을 사용하고 공인이 면제되는 색소의 경우, 색소 규정이 승인한 색소들만 사용해야 함
 - 예) 공인된 색소(Certified colors) : ‘FD&C Red No. 40’ 또는 ‘Red 40’ 공인이 면제된 색소(Non Certified colors) : ‘caramel coloring’ 또는 ‘beet juice’

9. 영양표시(Nutrition labeling)

- ❖ '94년 5월 8일 이후로 표시되는 대부분의 식품에는 New Nutrition label을 의무화해야 함. 2014년 3월, 10년 만에 영양분석표 개정안을 제안한 후 마침내 2016년 5월 27일 최종 개정안이 확정됨. 식품 제조업체들은 2018년 7월 26일까지 모든 식품에 개정된 영양 분석표를 부착하여야 함. 단, 연매출 1000만달러 미만인 사업체는 2019년 7월 26일이 시행일자임
 - 칼로리 확대 표기: 칼로리 및 1회 제공량, 일일 권장섭취량 등을 굵고 큰 볼드체로 표기하여 가독성을 높임
 - 현실적인 1회 제공량 표기: 1회 제공량이 실제 소비자들의 섭취량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예를 들어, 1 Pint 아이스크림 4회분-200칼로리를 2회분-400칼로리로 변경 표기)
 - 첨가당 표기: 천연당 이외 첨가당 성분을 표기하여 첨가당 섭취를 줄이고자 함
 - 일일 권장섭취량 수정 표기: 칼슘, 식이섬유, 비타민D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일일 권장섭취량에 몇 %를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표기해야 함
 - 칼슘, 철분, 비타민 D, 칼륨 함유량 의무 표기
- ❖ 다음의 식품들은 영양표시 면제대상이며 *가 표시된 식품들로 영양정보가 제공되거나 강조표시가 된 경우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함
 - *소규모로 조제된 식품
 -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거나 가정으로 배달되어 바로 먹는 식품
 - *제조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조제식품(요리한 고기, 훈제생선, 소시지, 과자, 사탕류)
 - *인스턴트 커피(plain, 무가당)나 대부분의 향신료 등과 같이 특별한 영양소가 없는 식품
 - 조제분유와 4세 미만의 영아, 유아용 식품(이 종류의 식품에 대해서는 수정된 라벨 규정이 있음)
 - 식사 보조용 식품(dietary supplements)
 - 의료용 식품(medical foods)
 - 소매되기 전 가공이나 포장을 위해 큰 단위로 수송되는 식품
 - *생식품이나 해산물(자발적으로 겉면에 영양표시를 할 수 있음)
 - 주문 가공생선(Custom-processed fish)이나 사냥육(game meat)
 - 상자 단위의 계란(영양정보를 뚜껑 안쪽이나 상자 안에 삽입)
 - “이 포장은 소매판매용이 아님”이라고 표시되어 안에 여러 단위의 포장에 되어 있고 밖에 모든 필요한 표시문구가 있는 경우

- Self-service bulk foods : 영양표시는 겉면에 하거나 본래 용기에 잘 보이도록 표시함
- 판매용이 아닌 소비자를 위해 증정용으로 만든 식품
- ❖ ‘영양정보(Nutrition Facts)’의 표시는 원재료명,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이름, 주소와 함께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음.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면(alternative panel)’에 표시할 수도 있음
- ❖ 포장이 세로로 공간이 부족해서 위와 같이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로로 표시할 수 있음
- ❖ 아침식사용 씨리얼이나 날개로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과 같이 한 포장 안에 여러 개의 소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소포장 단위 식품)의 경우에 제조자는 각각의 소포장에 일일이 영양정보 표시를 하거나 한 개의 포장에 통합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

10. 제조자·포장업자·유통업자 표시

- ❖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제조, 포장, 유통업자의 이름과 주소: 제조, 포장, 유통업자와 제조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회사와 제품의 관계를 명시하는 ‘~에서 제조한’ ‘~에서 유통하는’과 같은 문구가 표시되어야 함
 - 거리주소: 회사이름과 주소가 현행 전화번호부나 인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도시명, 주명(수입식품일 경우 국가명), 우편번호

1. 건강보조식품

가. 관련법규

- ❖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DSHEA)
- ❖ DSHEA에 근거한 건강보조식품의 라벨링 규정은 1997년 9월 23일 입안되어 1999년 3월 23일부터 효력 발생

나. 라벨링 요구조건

- ❖ 건강보조식품의 명칭(Statement of Identity): 통상적, 일반적 명칭과 dietary supplements 표기를 병행 예: “ginseng”
- ❖ 순중량(Net quantity): 예, “60 capsules”
- ❖ 구조-기능 주장 및 진술(Structure-function claim and statement): 예, “This statement has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 ❖ 복용법(Direction for use): 예, “Take one capsule daily.”
- ❖ Supplement Facts panel(건강보조식품영양정보): 일반식품의 영양분석표와 유사한 것으로 1회분 용량, 활성성분 함량 등이 기재
- ❖ 성분목록: 일반적, 통상적인 명칭으로 함량이 많은 것에서 작은 것의 순
- ❖ 제조업체나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 이름 및 주소
- ❖ 유통기한표기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표기시 합법적인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함

2. 신선농산물

가. 예외조항

- ❖ 원재료명 표기 : 이 조항은 2개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신선 농산물의 경우 그 자체가 하나의 성분이므로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영양분석표 : 영양분석표 면제대상으로 포장표기를 할 필요가 없으나 주요 식품의 경우 구매시점(소매점)에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진열대 별도표기를 권장

1. FDA 새로운 영양분석표

변경 항목	상세내용
제공량(Serving Size)	글자크기를 더 크고 굵게. 제공량은 실제 소비 되는량을 반영하여 작성
칼로리(calorie)	글자크기를 크고 굵게 하여 읽기 쉽게 함
일일값(daily value)	새로운 영양가이드라인 반영
추가된 설탕(added sugars)	새롭게 추가된 부분으로 제품에 추가된 설탕함유량 기재
실제 함유량(actual amounts)	비타민 D, 칼슘, 철분, 칼륨의 실제 함유량 및 일일 값 대비 퍼센트
각주(footnote)	퍼센트 일일값(% daily value)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출처 : 미국 식품의약국(www.fda.gov)

2. 식품별 유해물질 기준치

유해물질	식품	함량 기준(ppm)
알드린(ALDRIN)	바나나	0.02
	당근	0.1
	가지	0.05
	생선	0.3
	레몬	0.02
	파인애플	0.03
벤젠(BENZENE)	사과	0.05
	콩	0.05
	계란	0.05
	우유	0.3
	토마토	0.05

출처 : 미국 식품의약국(www.fda.gov)

3. 식품첨가물 함량 기준

첨가물 명칭	함량 기준
4-hydroxymethyl-2,6-di-tert-butylphenol	0.02% 이하(총 제품의 지방성분, 향산화제 단독사용, 향산화제 복합사용)
acacia(gum arabic)	4% 이하(유화제, 제형 보조제로 사용, 케이크, 브라우니, 페스트리, 머핀, 비스킷의 경우 3.0%)
acetic acid	0.15% 이하
agar-agar	2.0%(confectionary)(제품의 총량을 기준으로)(GRAS)
aconitic acid	0.0005% 이하
ammonium alginate	0.4%(Confections, frostings)(제품의 총량을 기준으로)(GRAS)
adipic acid	1.3% 이하
amyloglucosidase derived from rhizopus niveus	0.1%미만(호화전분무게기준 0.1 percent by weight of the gelatinized starch)
anoxomer	5,000ppm 이하(제품의 지방성분에 한함)
bakers yeast extract	식품의 5% 이하(GRAS)
calcium silicate	2% 미만(제품 무게), (baking powder의 무게기준으로 5%까지 사용제한)
licorice and licorice derivatives	0.1%이하(sugar substitutes에는 금지)(GRAS)
vitamin d2 bakers yeast	완제품의 100g 중 400 IU of vitamin d2(효모에 절여 구운제품, 베이킹믹스, 효모발효구운 스낵제품에 한해)

출처 : 미국 식품의약국(www.fda.gov)

4.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	Name			2. BLANKET PERIOD From: — — / / To: / / YYYY/MM/DD to YYYY/MM/D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3. PRODUCER	Name			4. IMPORTER	Name	
	Address				Address	
	Telephone				Telephone	
	Fax				Fax	
	E-mail				E-mail	
5. LIST OF PRODUCT(S) SUBJECT TO PROOF OF ORIGIN						
Serial No.	Description of Good(s)	Quantity & Unit	HS No(6 Digits)	Preference Criterion	Country of Origin	
6. OBSERVATIONS						
<p>I certify th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p>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p>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Date: YYYY/MM/DD			Telephone :		Fax:	

※ 참고자료

□ 웹사이트

- ❖ 미국 식약청(FDA) : www.fda.gov
- ❖ 미국 관세청 : www.customs.gov
- ❖ 미국 농무부(USDA) : www.usda.gov
- ❖ 미국 동식물검역소(APHIS) : www.aphis.usda.gov
- ❖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 : www.fsis.usda.gov
- ❖ APHIS fresh fruits and vegetables import manual
http://www.aphis.usda.gov/import_export/plants/manuals/ports/downloads/fv.pdf
- ❖ CFR Title 9 – Animals and Animal Product Regulation
<http://www.ecfr.gov>
- ❖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http://www.fda.gov/Food/FoodSafety/FSMA/default.htm>

□ 수입식품 관련 법규

- ❖ 미 연방 식품의약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as amended)
- ❖ 공정포장표시법(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 ❖ 수입우유법/치환유법(Import Milk Act/Filled Milk Act)
- ❖ 연방 부식성 독 법(Federal Caustic Poison Act)
- ❖ 보건 및 안전을 위한 방사능 통제 법(Radiation Control for Health and Safety Act)
- ❖ 21주제 CFR, 특히 파트 1, 하부파트 E수입과 수출(Title 21 CFR, especially Part 1, Subpart E-Import and Exports)

□ 관련 책자

- ❖ Importing Food into the United States – The Food Institute
- ❖ Guide to handling FDA Food Inspections – The Food Institute
- ❖ A practical guide to the regulation of seafood in the United States – Urner Barry publications
- ❖ A practical guide to FDA requirements – Urner Barry publications

제 5 장

통관문제사례 및 시사점

제 1 절

통관문제사례 동향

-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식품을 비롯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의 통관거부 건수를 발표하며, 불합격 상품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사유를 밝히고 있음
- ❖ 2016년 미국에서 통관이 거부된 한국식품은 총 193건으로 10월 통관거부 사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1월 9건으로 가장 적은 통관거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2016년 월별 미국 식품 통관 거부 건수



	한국산 불합격 건수(A)	한국산 불합격누계 건수(B)	전체 불합격 건수(C)	한국산 비율(A/C)
1월	10	0	901	1.1%
2월	23	10	948	2.4%
3월	18	33	746	2.4%
4월	17	51	752	2.3%
5월	14	68	789	1.8%
6월	14	82	816	1.7%
7월	21	96	781	2.7%
8월	14	117	700	2.0%
9월	14	131	527	2.7%
10월	28	145	874	3.2%
11월	9	173	751	1.2%
12월	11	182	610	1.8%
합계	193	193	9195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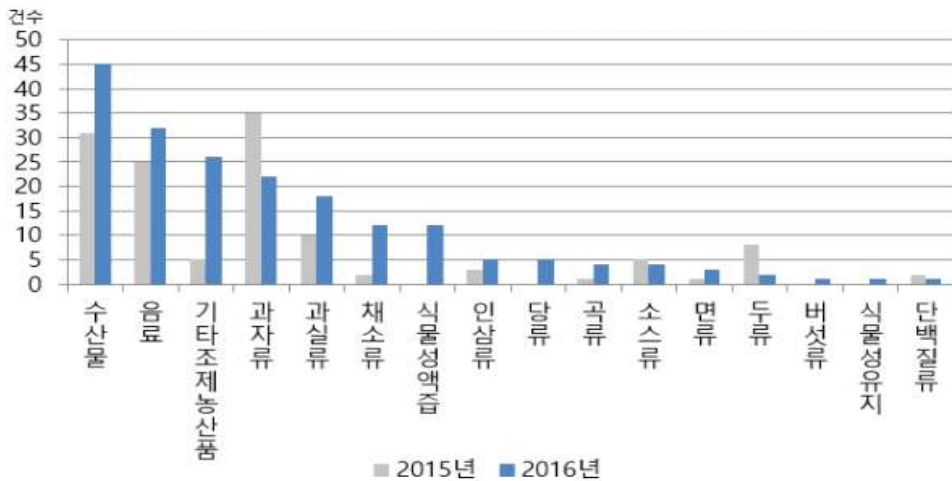
출처 : 미국식품의약국

□ 2016년 통관 거부된 한국산 식품 중 수산물, 음료, 기타조제농산품, 과자류 등이 불합격 제품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2016년 수산물이 45건으로 가장 많은 통관거부 사례를 기록했고 그 다음은 음료(32건), 기타조제농산품(26건), 과자류(22건) 등임

■ 2015~2016년 제품별 한국 식품 통관 거부 건수 ■

(단위 : 건)



제품 종류	2015	2016
수산물	31	45
음료	25	32
기타조제농산물	5	26
과자류	35	22
과실류	10	18
채소류	2	12
식물성액즙	0	12
인삼류	3	5
당류	0	5
곡류	1	4
소스류	5	4
면류	1	3
두류	8	2
버섯류	0	1
식물성유지	0	1
단백질류	2	1
합계	128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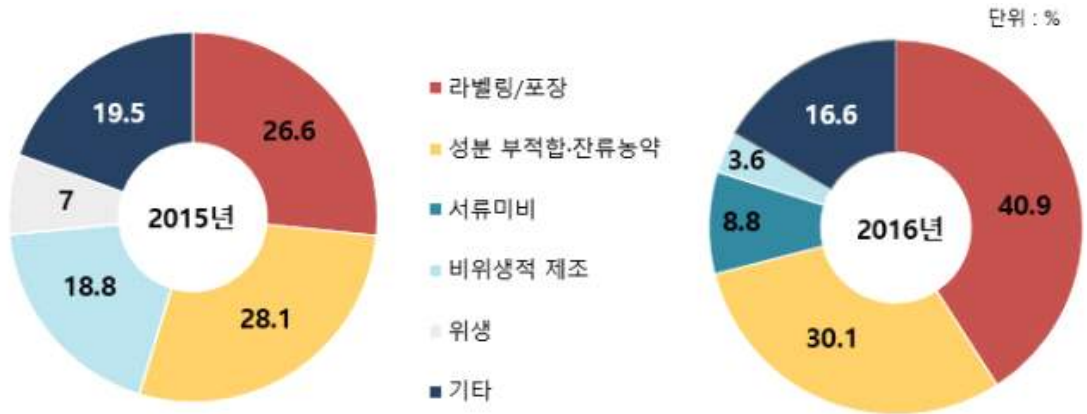
출처 : 미국식품의약국

□ 2016년 한국산 식품 가운데 가장 많은 통관거부 사례는 라벨 및 포장불합격이 차지함

❖ 2016년 통관 불합격 사유는 라벨링/포장 부문이 7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성분 부적합(58건), 서류미비(17건) 등임

- 식품첨가물은 유해색소, 살충제, 알레르기 원인물질, 잔류농약 등을 포함하며, 미생물은 리스테리아균 등을 포함함

■ 사례별 분류 ■



단위 : 건

거부 사유	2015년	2016년
라벨링/포장	34	79
성분 부적합·잔류농약	36	58
서류미비	0	17
비위생적 제조	24	7
위생	9	0
기타	25	32
합계	128	193

출처 : 미국식품의약국

□ 통관역류 거부코드

구분	거부코드(영문)	거부사유		거부내용 해설
1	ALLERGEN	제조	유해물질 함유	알레르기 원인물질 함유
2	BACTERIA	제조	유해물질 함유	박테리아 함유
3	COLOR LBLG	라벨링	표기 누락	인공색소 라벨링 없음
4	FALSE	라벨링	표기 불량	허위 라벨링
5	FILTHY	제조	유해물질 함유	오염/부패물질함유
4	HISTAMINE	제조	유해물질 함유	히스타민 함유
7	INPTRHACCP	제조	비위생적 제조	수입업체HACCP미인증
8	INCONSPICU	라벨링	표기 불량	불명확한 라벨링
9	INSANITARY	제조	비위생적 제조	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
10	JUICE %	라벨링	표기 누락	주스함량 미표시

구분	거부코드(영문)	거부사유		거부내용 해설
11	LABELING	라벨링	표기 불량	잘못된 라벨링
12	LACKS FIRM	라벨링	표기 누락	제조사 정보 없음
13	LACKS N/C	라벨링	표기 누락	무게 및 크기 표시 라벨 없음
14	LIST INGRE	라벨링	표기 누락	재료 라벨 없음
15	LISTERIA	제조	유해물질 함유	리스테리아균 검출
16	MELAMINE	제조	유해물질 함유	멜라민 검출
17	MFR INSAN	제조	비위생적 제조	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
18	MFR HACCP	제조	비위생적 제조	제조공정HACCP미인증
19	NEEDS FCE	제조	약산성식품 미등록	미등록 약산성식품
20	NEEDS ACID	라벨링	표기 불량	약산성식품 표기불량
21	NO ENGLISH	라벨링	표기 누락	영문라벨 없음
22	NO PROCESS	라벨링	표기 누락	제조과정 자료 없음
23	NONRSP-VER	제조	비위생적 제조	부적합한 제조공정
24	NUTRIT LBL	라벨링	표기 누락	영양분석표 라벨 없음
25	PESTICIDES	제조	유해물질 함유	살충제 검출
22	POISONOUS	제조	유해물질 함유	독성물질 검출
23	PRESRV LBL	라벨링	표기 불량	방부제 성분 표기불량
24	SALMONELLA	제조	유해물질 함유	살모넬라균 검출
25	SULFITE LBL	제조	유해물질 함유	아황산염물질 표기 누락
26	TRANSFAT	라벨링	표기 누락	트랜스지방 표기누락
27	UNAPROVED	제조	유해물질 함유	미등록 약품 함유
28	UNDERPRC	제조	비위생적 제조	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
29	UNFIT4FOOD	제조	유해물질 함유	불량식품
30	UNSAFE ADD	제조	유해물질 함유	유해첨가물 함유
31	UNSAFE COL	제조	유해물질 함유	유해색소 함유
32	USUAL NAME	라벨링	표기 불량	식품명칭 표기불량
33	WRONG IDEN	라벨링	표기 불량	식품용도 표기불량
34	YELLOW #5	제조	유해물질 함유	황색색소5번검출
35	HEALTH C	라벨링	표기불량	허위건강적효능
36	VITAMN LBL	라벨링	표기불량	허위광고
37	DIETARY	라벨링	표기불량	허위건강관련문구
38	STD IDENT	라벨링	표기불량	식품정체성기준불량

□ FDA 관할분소 약어

FDA지구 약어	지구 이름	FDA지구 약어	지구 이름
ORA	ORA Headquarters	MIN	Minneapolis
KAN	Kansas City	NOL	New Orleans
ATL	Atlanta	NYK	New York
BLT	Baltimore	PHI	Philadelphia
NWE	New England	SAN	San Francisco
CHI	Chicago	SEA	Seattle
CIN	Cincinnati	FLA	Florida
DAL	Dallas	SJN	San Juan
DEN	Denver	NWJ	New Jersey
DET	Detroit	SWID	Southwest Import District
LOS	Los Angeles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최근 미국 정부의 수입식품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가 위생 및 검역(SPS)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실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함
 - ❖ 2016년 한국산 식품 가운데 가장 많이 해당된 거부 사유로는 라벨링/포장문제로 과자류, 음료류 등이 포함됨
 - ❖ 2016년도에 발생한 한국산 식품의 대미수출 시 식품위반 사례는 총193건으로 2015년에 발생한 128건에 비해 66.3% 증가하였음
 - 위반이유 중 제일 큰 것은 라벨링/포장 위반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40.9%를 차지함으로써 2015년도의 26.6%보다 증가한 상황임
 - 신선농산물을 포함한 농산식품류의 위반사례는 90건으로 전년도 32건에 비해 281.3%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활어를 포함한 수산식품의 경우 위반사례는 45건으로 전년도 31건에 비해 약 145.2%의 급증세를 보임
 - 위반 원인의 대부분은 살충제와 같은 잔류농약 검출로 수출 전 제품의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가 필요시 됨
 - ❖ 최근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수입제품의 통관기준이 강화되는 추세
-
- 과자, 음료 등의 가공식품, 영양성분표 표시 관련 라벨링 주의
 - ❖ 지난2016년 1월~12월 한국산 과자, 음료는 수입 검역과정에서 각각 32건, 22건 적발됨
 - 적발된 과자, 음료 등의 제품은 유통기간이 길어 균락총수 또는 대장균 관련 병원균이나 유통기한 초과와 관련된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으나, 불명확한 라벨링, 영양정보 표시 미비 등의 적발 사례가 다수

- ❖ 최근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영양성분표 표시가 개정됨에 따라 포장된 식품과 음료수 등에 부착되는 영양성분 표시에 제조과정에서 설탕이 얼마나 첨가됐는지, 일일 권장섭취량의 몇 %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표시해야 함
 - 미국에서 탄산음료에 대한 제재는 이미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FDA의 영양성분표 개정과 더불어 일리노이 주의 경우, 탄산음료에 대한 세금이 부활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역시 설탕 첨가 음료수 광고에 비만과 당뇨병, 충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삽입 등 라벨 및 광고문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트럼프 반덤핑’ 정책에 대비

- ❖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 기준에서 중국에 이어 2위, 상계관세 조사 건수로는 중국, 인도에 이어 3위를 차지함
 - 관련규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수출기업들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임
- ❖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타 국가의 수출기업이나 미국 내 수입자와의 협력이 필요
 - 초반 대응, 철저한 질문서 답변, 회계시스템 정비, 무역구제 조사를 대비한 가격 책정 및 보조금 관리가 필요
 - 또한, 기업들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받더라도 연례재심 청구, 신규수출자 심사, 미국 국제무역법원 항소 등 다양한 해결 시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식품첨가물 제도 이해를 통해 통관거부 사례 비율 줄여 나가야

- ❖ 현재 실행되고 있는 GRAS제도에서는 FDA가 GRAS성분을 검토하지 않아도 되며, 업체 또한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실제 FDA에 신고한 GRAS성분과 FDA에 자진신고한 성분 수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란, 의도한 용도대로 사용했을 경우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성분을 뜻하며, 소금, 후추, 식초, 베이킹파우더, MSG와 같은 일반 식품원료도 의도한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음
 - GRAS는 기업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파악하는 자율성이 있어 인증 이후 문제가 생겨 업체가 사용을 중단해도 일반에 알려지는 경우가 드물
- ❖ 이러한 이유로 FDA는 GRAS성분 절차를 다룬 ‘GRAS 성분’ 규정을 고시하여 식품첨가물 승인절차에 대한 혼란을 줄여나가고 있음
 - 2016년 통관거부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국산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은’ 성분으로 규정된 색소이거나, 해당제품에 그 색소가 함유된 제품으로 판명되어 통관이 거부된 제품이 20건으로 조사됨. 이에 기업들은 FDA 정책동향을 더욱 세심히 살펴 수출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 FDA는 가공식품 가운데 인공 트랜스지방의 비율을 줄여 나가자 트랜스지방의 주요 식이 공급원인 부분경화유의 GRAS자격을 철회하고 식품첨가물로 변경되었음을 발표함
- ❖ 카페인 소비량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카페인 함유량이 포함된 에너지음료, 카페인 주류, 껌 등이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많은 소비가 이루어짐. 이에 대해 고카페인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FDA의 성분관리가 더욱더 강화될 전망이다

□ 세관의 한·미 FTA 원산지 검증작업이 강화되는 전망에 따라 서류준비 주의

- ❖ 미국 세관이 한·미 FTA 원산지 검증작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원산지 검증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높아짐
 - FTA 원산지 증명서란,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수입국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하는 서류임
 -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으로 구분됨
 - 미국 현지 통관전문가에 따르면,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것을 밝힘
- ❖ 영업상의 이유로 구입처나 단가 공개를 거부하는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 같은 업체들은 원료 공급업체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 기본적으로 미국 수출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세관 수입신고서: 수입한 물품을 신고하기 위한 문서로 수입업자가 작성하여 제출
 - 상업송장: 무역거래 시, 계약이행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업자에게는 대금 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함
 - 포장명세서: 포장 속에 들어있는 상품의 목록을 기술한 서류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하는 서류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선주가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도착항에서 일정 조건하에 수하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
 - 미국 화물인도지시서: 선주 또는 그 대행대리점으로부터 본선의 선장 앞으로 발행된 화물인도지시서. 컨테이너의 경우 선사가 화물보관인 CFS, CY운영업체(Operator)에 D/O(Delivery Order) 지참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서류
- ❖ 2016년 서류미비로 적발된 통관거부 사례 건수는 17건으로, 2015년 0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같은 사례는 제품성분 및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행정상의 이유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수출기업들은 이 같은 부분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통관거부사례 비율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법률규정 및 최근 동향

□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7가지 주요 시행 규정

❖ 개요

-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의 식품안전현대화법 서명 후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식품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명적인 개혁이 이루어짐
- FDA에서 발표한 각각의 식품안전현대화법 7가지 시행 규정에는 식품 공급체계의 사후 대처하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사전 식품 오염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 산업에 더 많은 책임을 묻는 새로운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FDA의 식품안전현대화법 7가지 주요 시행 규정의 중요한 부분과 시행일자는 아래와 같음

❖ 주요 시행 규정 내용

1&2 항목) 식품과 동물사료에 관한 예방적 통제 규정(Preventive Controls rules; Human Food and Animals Food)

- 제안일자 : 2013년 1월(식품), 2013년 10월(동물사료)
- 발효일자 : 2015.9.19
- 단속일자
 - 2016년 9월19일 → 일반기업
 - 2017년 9월18일 → 중소기업(500명 미만의 정규 직원)
 - 2018년 9월19일 → 소기업(연매출 \$1백만 미만)
- 살균유법령(Pasteurized Milk Ordinance)이 적용되는 사업체
- 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식품안전계획을 성립해서 운영하여야 하고 그 핵심요소는 식품에 알려져 있거나 또는 예측되는 생물학적,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또 통제하는 안전 계획을 서류화해야 함

- 각각의 인지된 위험의 경우, 식품 안전 계획에 따라 반드시 예방을 위한 통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며, 또한 위험의 최소화, 또는 예방을 위해 예방 과정을 설명해야함.(위해요소분석)
- Preventive Control Qualified Individual(QI)을 시설별로 배치하고, 식품안전계획에 따라 각 시설들은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준수해야 함.(사전예방)
- 식품과 동물사료에 관한 예방 통제 규정은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 및 부자재를 포함하여 위험 요소가 발생 시 공급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가능함. 식품과 동물사료 관련 시설들은 동 규정을 준수키 위해 FDA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타사 도구를 통해 공급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
- 현행우수제조관행(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GMPs)이 보다 명확하게 명시되었으며, 교육 및 훈련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없던 조항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됨

3항목) 농산물 안전(Produce Safety rule)

- 제안일자 : 2013년 1월
- 발효일자 : 2016년 1월26일
- 단속일자
 - 2018년 1월 26일 → 대기업
 - 2019년 1월 28일 → 중소기업(\$250,000-\$500,000/연평균)
 - 2020년 1월 27일 → 영세업체(\$25,000-250,000/연평균)
- 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에 대하여 과학적인 안전성 기준을 수립함.
- 동 규정은 수확물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키 위해 수질 검사, 방목 지역 검사, 유기질 비료 신청 및 직원 건강, 위생 교육 등의 새로운 요구사항 신설을 통해 농장에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였음. 동 규정은 자주 발생하는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

① 농업용수

- 수질: 두 가지의 미생물 수질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두 가지 모두 분변 오염을 나타내는 대장균의 유무에 기반 한 기준임
 - 미생물이 보유된 물은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는 한, 직간접적 농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나, 대장균이 검출될 시, 무조건 물의 사용을 중지하고 교정 조치를 취해야 함
 - 농산물에 직접 사용되는 농업용수에 관한 기준은 기하평균(GM)과 임계값(STV)값을 토대로 한 샘플로 결정되며, GM의 경우 100mL당 126CFU, STV의 경우 410CFU 이하여야함
 - 만약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1년 이내에 교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교정 조치 이후 용수의 사용이 가능함
- 검사: 수확기에 가장 근접하며 2-4년 사이에 재배된 20개 이상의 샘플로 최초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함. 그 이후 검사는 전 검사와 비교할 수 있는 5개 샘플 조사를 추가적으로 요구함. 결과는 GM/STV의 미생물 수질을 조사하여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함. 지하수의 경우, 최소 4개의 샘플을 사용하여 검사하고, 이후 3개의 샘플을 추가 검사하여 전 검사와 비교 평가함

② 생물학적 토양 개정

- 두엄(Raw Manure): 오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엄의 위험분석을 실시함.
- 동 법규에는 두엄 사용 시 곡물과의 접촉이 안되게 하고 사용 후에는 가능한 접촉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할 것을 요구

③ 싹(Sprouts)

- 싹을 틔우기 위해 사용되는 씨앗 또는 콩의 표면에 미생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함. 싹에 대해 특정 병원균 감염 여부를 검사함
- 재배, 수확, 포장, 및 저장 과정에서 리스테리아균의 생식 여부를 검사 하며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교정 조치를 취해야 함

④ 직원 훈련, 건강 및 위생

- 직원 개인이 건강문제로 농산물이나 식품을 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면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농산물 접촉 시 위생관리절차를 준수하고, 화장실 이용 시 세척과 건조를 의무화 함.
- 농가 직원들과 관리자들은 건강 및 위생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어야 함

4항목) 해외공급업체 인증 프로그램 규정(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rule)

- 제안일자 : 2013년 7월
- 발효일자 : 2016년 1월 26일
- 단속일자 : 2017년 5월 30일
- FSVP 규정은 수입업체에서는 반드시 해외 공급 업체가 FDA의 규제요구사항에 맞춰 식품을 제조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해외시설인증, 안전시스템운영 등)
- 수출자가 해외공급업체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식품으로 인한 위험 요소와 자사의 식품 안전에 대한 실적을 분석하여야 함
- 위험 분석
 - 수입자는 수입하는 식품의 질병데이터, 과학연구서, 기타정보를 토대로 위험하거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확인할 책임이 있음
 - 위험 범위란 기생충 및 박테리아 등 생물학적 잠재 위험과 방사선, 살충제 잔존물, 천연독소, 색소, 알레르기 유발 등 화학적 위험 요소와 유리와 같은 물리적 위험 요소 등임
 - 위험 분석시 고려 요소는 식품의 배합, 수출업체의 시설 설비 상태, 원재료 및 기타 성분, 수확, 재배, 제조, 포장 등 모든 공정 과정, 운송 방식, 포장, 라벨링, 저장, 유통, 의도한 용도,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용도, 직원의 위생 상태를 포함한 전반적 내용이 포함됨
- 공급 업체 선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행위는 공급 업체의 연간 현지 시설 검사, 수입 식품의 샘플 접수 및 사전 검사, 공급업체 관련 식품 안전 기록 확보 및 검토를 해야 하며 규정 위반 시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업체와 거래 불가함
- 면제 기준
 - 수입품의 완제품여부, 재료 및 성분에 따라 면제 기준이 다름
 - 현재 모범 제조 방법(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적용을 받고 있는 수입자는 FSVP가 면제됨

5항목) 제3자 인증에 대한 최종 규정(Accredited Third-Party Certification rule)

- 제안일자: 2013년 7월
- 발효일자: 2016년 1월 26일
- 단속일자: 의무사항이 아님(자발적 시행)
- 식품안전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해외식품 시설 및 생산된 식품이 FDA의 식품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 후 인증을 하게 함.
- FDA에서 요구하는 공인기관의 승인조건과 제3자 인증기관의 공인 조건
 - 법적권한, 수행능력, 규모, 품질 보증 및 기록, 관리 절차.
 - FDA가 제3자 인증기관을 공인할 수 있음.
 - 인증기관이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시, ISO/IEC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문서 사용을 허용함.
 - FDA는 인증기관을 감시하고 문제 발생 시 취소 할 수 있음.
- 인증기관 요구사항
 - 해외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으로써 FDA 절차를 따르는 기관.
 - 정기 현장조사 및 자격 변경 유무 보고를 통한 업무 성과 모니터링 실시.
 - 자체 업무 평가를 통한 문제 시정.
 - FDA에 모니터 보고서, 평가보고서 및 기타 공지사항 제출.
 - FDA에 보고서 열람 권한 부여 및 접속 방법 제공.

6항목) 식품 및 동물 사료 위생적 운송 최종 규정(Sanitary Transportation of Human and Animal Food rule)

- 제안일자: 2014년 2월
- 발효일자: 2016년 6월6일
- 단속일자: 2017년 4월
 - 소기업(500명 이하 임직원, 연소득 \$27,500,000 이하): 2018년 4월
- 식품을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식품의 오염을 막고 위생적으로 운송하게 하는 규정으로 선박, 항공을 제외한 모든 운송업 종사자에게 적용됨.
- 적용대상
 - 면제 대상을 제외한 미국 내 차량, 철도 운송과 관련된 종사자 모두
 - 선박, 항공의 경우, 미국 내로 수송, 하역, 출하를 하는 경우는 동 법규에 적용됨

- 미국 도착 수하물이 미국 내 국경에 도착할 때까지 이 규정의 범위 안에 포함됨.

- 주요 요건

- 차량 및 운송장비 : 식품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차량 및 운송 장비를 설계하고 유지 보수해야함.(예시. 청결, 온도유지 등)
- 운송 작업 : 적절한 온도조절, 즉석 식품의 상태 관리, 비 식품류에 의한 식품 오염 방지 등 운송 도중에 식품 안전을 위한 조치 사항.
- 교육 : 위생관련 운송 관행을 숙지하고 교육하며, 교육 내용을 문서화하고 출고인과 운송인의 책임 분장이 이루어 져야 함.
- 기록 : 식품의 보관 기간 동안 보존하되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 변경 사항

- 관행보다는 안전 위험 유발에 관한 관행에 초점을 둬.
- 서면 계약에 조항을 삽입하지 않는 한 위생 상태 책임은 출고인에게 있음.
- 자동차의 경우 운송업자가 위생에 직접적 관여해야함.
- “하역작업자”가 적용대상으로 추가됨.
- 온도에 관련된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해야함.
- 온도조절에 대한 판단은 출고인에게 있으며, 책임소재 또한 출고인에게 있음
- 식품안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유통 및 판매가 불가함.
- 면제범위 : 연매출 \$500,000이하의 소기업, 농장에서의 운송, 추가 가공을 하지 않는 동물 사료용 식품, 완전 밀봉 제품

7항목) 고의적 식품 보안 규정(Intentional Adulteration Rule)

- 제안일자 : 2013년 12월

- 발효일자 : 2016년 7월 26일

- 단속일자

- 2019년 7월: 일반기업
- 2020년 7월: 중소기업(연매출 \$10,000,000 미만)
- 2021년 7월: 소기업(정규직원 500명 이하)

- 식품 제조 시설물을 FDA에 등록하고 공공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식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산 시설을 검사하고 자체 취약성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요구함.

시행일 연장) 식품안전현대화법 7개 최종규칙 중 4개 규칙에 대한 시행일 연장

- 본 최종규칙 시행일 연장은 식품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체들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규칙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임
- 7개 최종규칙 중 4개 규칙에 대한 변경된 시행일은 다음과 같음
 - 변경 일자는 연방관보 상 소비자 조항의 서명 보증서(Written assurance in the customer provision)만 해당함
 - 해당시설의 위험도 평가시에 고객으로부터 해당 식품이 FSMA의 규정을 준수하여 제조 및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여 받는 서면 보증서만 연기됨.
 - FSVP의 경우는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substances) 수입 관련 또한 연기됨

하위 규칙	업체 규모*	시행일(기존)	시행일(변경)**
식품의 우수제조관리기준(cGMP), 위해요인 분석, 위해기반 예방관리	중소업체	2017. 9. 18	2019. 9. 18
	대기업	2016. 9. 19	2018. 9. 19
사료의 우수제조관리기준(cGMP), 위해요인 분석, 위해기반 예방관리	중소업체	2018. 9. 17	2020. 9. 17
	대기업	2017. 9. 18	2019. 9. 18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FSVP)	수입업체	2017. 5. 30	2019. 5. 28
농산물의 재배 및 수확, 포장, 보관에 관한 기준	영세업체	2020. 1. 27	2022. 1. 26
	중소업체	2019. 1. 28	2021. 1. 26
	대기업	2018. 1. 26	2020. 1. 27

※ 나머지 3개 규칙은 계획대로 시행

* 영세업체 : 새싹채소 생산업체 제외한 연소득 \$25,000이상 \$250,000미만

중소업체 : 새싹채소 생산업체 제외한 연소득 \$250,000이상 \$500,000미만 및 정규직원 500인 미만

대기업 : 영세 및 중소업체를 제외한 연소득 \$1 million 이상

(단, 사료 cGMP 및 예방관리 규칙 경우 \$2,500,000이상)

□ 미국 식품현대화법(FSMA), 수입업체가 알아야 할 내용은?

❖ 시설등록

- 제조, 유통, 판매 등 업체는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함
- 심각한 식품안전 문제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등록을 보유할 수 있음(등록보류 제품은 미국 내 유통 불가)

❖ 위해평가, 예방조치, 기록 및 확인의무

- 제조공정 중 위해요인 평가, 위해요인 감소·제거 방안마련, 관리방안 모니터링, 기록보관, 문제 발생 시 개선계획 수립이 필요함
- 식품안전관리감독을 위한 식품안전계획서는 만들어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함. FDA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FDA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문서로 식품의 생산 및 제조, 유통, 사고방지 노력 등을 평가하게 됨
- 따라서 식품시설에 검사를 나온 FDA 검사관이 문서화된 계획서를 요구하면 보여줘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시설위험도를 평가할 때 식품이 식품안전현대화법 규정을 준수해 제조되었다는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확인받고 문서화해야 함
- 이를 서면고객보증서(written customer assurances)라고 함. 이는 고객에게 관리책임이 주어짐. 소형업체는 2018년 9월, 일반업체는 2019년 9월부터 이 규정을 따라야 함

❖ 실사 빈도 단축

- 해외시설은 법 발효 1년 내 600개 이상 검사, 5년동안 매년 2배씩 확대 예정임
- 고위험 국내시설은 법 발효 5년 이내 점검 후, 매 3년마다 실사 예정임
- 고위험군 아닌 국내시설은 법 발효 7년 이내 점검 후, 매 5년마다 실사 예정임
- 최근 미국 내 고위험 식품시설에 대한 분류기준 발표(FDA홈페이지)

❖ 고위험식품에 대한 수입인증서 요구 가능

- 고위험 식품에 대해서 수입되기 전 고위험식품인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식품분석 실험실 인증

- 정부 또는 인증 받은 실험실만 식품 분석이 가능함

❖ 수입업체의 해외공급 업체 검증 프로그램 의무

- 각 수입업자는 위해에 근거하여 해외 식품공급업체의 생산제품이 미국법령 적법성 등에 대해 검증활동을 하도록 규정

□ 신선농산물 농약관련 제도

- ❖ 1996년 8월, 미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A)에 포함되어진 식품품질보호법(Food Quality Protection Acts; FQPA)에 의거해 EPA는 지난 2006년 8월 잔류농약허용 기준치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식품에 남아있는 예상 잔류농약허용 기준치와 실제 잔류농약허용 기준치 연구가 반영된 규정임
 - 2009년, 감자 및 감귤류에 카보퓨란(carbofuran), 알디카브(aldicarb)농약 사용 및 모든 생산물에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농약 사용을 금지함
 - 2010년, 포도 및 딸기에 메토밀(methomyl)농약 사용 및 모든 제품에 대해 메틸파라티온(methyl parathion)농약 사용을 금지함
 - 2012년, 콩, 대두, 아몬드에 각각 아세페이트(acephate), 옥사모일(oxamyl), 이미다클로프리트(imidacloprid)농약 사용을 금지함
 - 2013년, 모든 가정에 대해 메틸파라티온 농약 사용 및, 사과, 배, 복숭아에 포메타네이트 HCl(formetanate HCl)농약 사용을 금지함
- ❖ 미국은 Zero Tolerance 제도를 통해 자국의 농업보호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 Zero Tolerance: 미국 내 자국에 허용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에 대해서는 불검출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실제로 잔류기준이 없는 경우, 주정부에 따라 0.01~0.1ppm 적용)
- ❖ Pesticide Data Program(PDP): 1991년에 개발되어 AMS에서 관리하는 농약데이터프로그램인 PDP는 자국, 수입 신선/가공 농산물, 유제품 등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통해 잔류농약허용 기준치를 검출해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잔류농약 검출치, 제품군(유기농, 비유기농) 등 검사결과를 공개하여 농약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검사되는 샘플들의 99%가 EPA 잔류농약허용 기준치 이하를 기록하는 성과를 냄
- ❖ Pesticide Program Residue Monitoring: FDA에서 진행하는 잔류농약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를 1987년부터 연간보고서로 발간하여 대중들에게 공개함. 보고서를 통해 식품의 잔류농약 수치가 적절한 식품안전성기준을 기반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줌

❖ 미국의 계속되는 식품안전성 문제로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 및 오염검사를 강화하는 추세임

-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신선농산물이 잔류농약허용기준치를 초과하거나 EPA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농약 사용으로 통관되지 못한 채 폐기처분 또는 압류조치를 받은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수출농산물 품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서비스를 활용하여 통관거부 사례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대미 수출 시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y Operator)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활용 장려

❖ 2016년 12월 관세청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의하면, 기존 복잡했던 AEO 공인기준 중 유사 및 중복된 부분은 통폐합하여 공인 소요기간을 2개월로 단축

- 최근 미국의 행정명령 등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통관에 대한 검사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이 AEO MRA를 활용할 것을 장려

❖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통관 시 이점 누릴 수 있음

- 상호인정협정(MRA)란, 상대국에서 실시한 제품, 공정, 서비스의 적합성 평가결과와 절차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협정, 각국의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
- 관세청이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내부통제시스템, 법규준수가 적정한 지 심사해 우수기업은 다양한 혜택 제공
- AEO MRA를 활용할 시 통관 시 중복적 시험의 방지, 불필요한 규제비용 절감, 수입 검사율 축소, 검사선별 시 우선 검사,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 시 우선 조치 등의 이점이 있음

□ 미국식품의약국(FDA)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정 강화

- ❖ 미국식품의약국(FDA)이 2016년 8월 8일 담배 제품에 대한 강화된 규정을 발효, 국민들의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정 강화
 -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관련 완제품에 적용될 예정
 - 소비자에게는 규제강화로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담배상품 구매금지 및 구입 시 신분증제시 등, 유통업자에게는 담배제품 자동판매기에서 판매금지 등의 규정이 추가됨. 이에 따른 수요측면, 유통측면에 있어서의 변동도 예상됨
 - 향후 2년 생산업체는 새로운 담배제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 후 적합할 경우 마케팅 권한(marketing authority)을 부여,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제품에 FDA 법률 집행
- ❖ 라벨링과 광고내용, 제품리스트, 담배 건강 관련문서, 성분 리스트 제출규정 및 신제품 출시제한 규정 강화
 - 2016년 8월 8일 이후, 유해성완화담배(MRTP, Modified Risk Tobacco Product)가 아닌 경우, “light”, “low”, “mild”와 같은 표현 사용금지
 - 2017년 2월 8일까지 담배제품의 건강문서를 제출,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 2017년 8월 8일까지 제출
 - 2017년 5월 10일까지 시가렛 경고 계획 제출
 - 2017년 6월 30일까지 라벨링과 광고를 포함하여, 제품의 리스트를 제출
 - 2017년 8월 8일까지 성분 리스트를 제출,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 2018년 2월 8일까지 제출
 - 새로운 담배제품은 FDA가 출시를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출시 불가, 신제품 출시하기 위해 시판 전 제품을 제출해야 함

□ 미국식품의약청(FDA) 색소첨가제로서 과일주스 및 야채주스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 제시

❖ 미국식품의약청(FDA)에서 2016년 12월 색소첨가제로서 과일주스 및 야채주스 사용에 대한 초안 제시

-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았지만, 생산업체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
- 2017년 5월 1일까지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최종안을 작성할 예정

❖ 과일주스(21CFR73.250)와 야채주스(21CFR73.260)는 색소첨가제로서 음식에 사용 가능

- 색소첨가제로 사용 가능한 과일주스(21CFR73.250)는 신선하고, 식용 가능한 과일에서 추출한 주스 혹은 건조된 과일에서 우려낸 물로 정의
- 색소첨가제로 사용 가능한 야채 주스(21CFR73.260)는 신선하고, 식용 가능한 야채에서 추출한 주스 혹은, 건조된 야채에 우려낸 물로 정의
- 공통적으로 색소첨가제가 농축되거나, 건조된 상태이거나 혹은 색소첨가제로서 음식에 사용하는 데 안전하고 알맞은 희석용액을 포함할 수 있음

□ 미농림부(USDA) 유기농 가축 및 가금류에 대한 규제 강화

❖ 미농림부(USDA)가 2017년 1월 19일 유기농 가축 및 가금류에 대한 강화된 규정을 발표

- 유기농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유기농 가축과 가금류에 대한 기준을 강화시키고, 유기농 생산공정의 적합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음
- 2017년 5월 19일부터 효력 발생

❖ 강화된 규제에서는 유기농 가축 및 가금류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들 제시

- 생산자 및 유통업체가 가축과 가금류의 키우는 전 과정뿐만 아니라, 운송, 도축을 포함하여 가축과 가금류의 건강과 웰빙(well-being)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명시
- 유기농 가축 및 가금류 생산과정에서 허용되는 물리적인 개조와 금지되는 물리적인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 가금류의 실내 및 실외의 최소 공간 기준 설립

□ 미국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규제 강화

- ❖ 오바마 대통령 2016년 7월 29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기 의무화법 서명
 - 주마다 상이한 GMO 표기법을 일원화하기 위해 모든 주법에 우선하는 연방법이 통과
 - 2016년 7월 1일 시점으로 효력 발생
 - USDA 향후 2년 내 미 통합 GMO 표기 의무화 관련 세부 시행규정 수립 예정
- ❖ 유전자변형식품(GMO) 표기 방안제시
 - 유전자변형식품(GMO) 포함 제품의 경우, 글자, 심벌, QR코드 중 한 가지로 표시
 - 영세업체의 경우, 제품의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URL 표기해 소비자들이 직접 찾을 수 있게 안내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미국식품의약청(FDA) 가공식품 내 나트륨함량 규제강화 추세

- ❖ 미국식품의약청(FDA)이 2016년 6월 1일, 가공 식품 내 나트륨 함량 규제 지침서 초안 발표
 - 미국 소비자들의 나트륨 섭취량 조절을 통한 건강증진이 목적
- ❖ 나트륨 함량 지침서 초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목표 나트륨 섭취량 설정
 - 단기(2년), 장기(10년) 목표로 나트륨 섭취량을 2년간 11.8%, 10년간 23.3%을 추가로 줄인 2,300mg를 최종 권장량으로 결정
- ❖ 미국 전역에 식품을 판매하는 대형 식품제조업체 및 체인 외식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 ❖ 미국 내 식품 공급업체들의 나트륨 함량을 감소시키는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명시하여 150여 개의 다양한 가공식품에 대해 합리적인 나트륨 감소방안을 제안해 줄 것으로 예상됨

제 6 장

수출업체 애로사항

제 1 절

애로사항 해소사례(aT지원)

No.	제목	지역	미국(서부)
1	미국 식품법 개정을 반영한 라벨링 지원 통해 통관 및 수출 성공	품목	기타가공식품
업 체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전 필수검토 사항 및 미국 FDA 식품라벨 영양분석표(Nutri Data) 개정에 따른 라벨링 제작 등 사전준비 필요 		
aT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화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美 현지법인 설립 관련 비용, 절차, aT지원사항 등 안내 (통관) FDA 등록절차, 시설등록 관련 문의 응대 (관세) 한국산 제품 면세 원산지검증기준, HS코드 식별 (검역) Nutri Data 추가 당류 규정 및 계산법, 식품색소 사용규정, 제한량 등 수출가능여부 및 통관규정 검토 (미국 라벨링 제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사) 통관거부, 통관지연의 원인이었던 라벨링 신규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이섬유, 콜레스테롤 함유량 및 알레르기 위험물질 표기규정 등 보완 (B사) 미국 프랜차이즈 개업을 위한 소스 등 부속재료 수출 통관을 위한 영양분석 및 라벨제작 지원 (C사) 미국 신규 법령개정에 발맞춰 실험실 필수영양소 분석 등을 선행하여 식품라벨에 반영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A사) 신속한 수입통관 성공 (B사) '16.12월 1만불 수출 성공('17 수출확대 전망) (C사) 제품 경쟁력 인정받아 '16년 22,000 케이스 판매 및 '17년 추가 판매 예정 		

No. 2	제목	통관, 라벨링 제작은 기본, 포장과 현지 매장 입점까지 One-stop 지원	지역	미국(동부)
			품목	쌀, 쌀가공식품
업체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업체) 미국 新라벨법 개정에 따라 관세 등 기초통관 준비부터 라벨링까지 수출준비 전과정에 애로 *국내 유통과정 의무표기사항이 아닌 알레르기 성분표기규정 등 대비 ○ (바이어) 수입국 현지 소비자 수요 파악 및 진출전략 수립 등 		
aT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화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 미국 통관기본절차 및 준비사항 개요 등 - (관세) 원산지확인서 발급 등 한-미 FTA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절차 및 준비서류 등 - (검역) 미국 농수산물 품질마크, 유기농인증 마크 부착기준 자문 - (기타) 품목군 미국 대형유통업체 진출 현황 시장조사 ○ (라벨링) 미국 新라벨링 건강기능성 및 일반식품 규정에 맞는 성분, 권장량, 보관방법 등이 포함된 식품라벨링 제작 ○ (포장패키지 현지화) 미국시장 트렌드와 대형유통업체 수요에 맞는 포장패키지 디자인 개발을 통해 입점계약 성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건(vegan), 글루텐프리(gluten-free) 등 포장표기 문구 적정성 검토 및 관련 규정도 컨설팅 하여 포장표기에 반영 <div data-bbox="358 1089 1148 1333" data-label="Image"> </div> <p style="text-align: center;">對미국 수출 쌀과자 포장표기문구 및 디자인 개선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 특화컨설팅) 효과적인 내수판매를 위한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과자 종류, 소비자 타겟팅, 미국 지역별 선호도, 마켓 트렌드, 제품특성, 경쟁사 제품 대비 경쟁력, 미국 소비자 설문조사 등 제공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대형유통업체 입점계약 성사 ☞ '16년 A업체 쌀과자 1,152 천불 수출 지원 		

수출애로 및 건의사항

No.	제목	해당국가	미국
1	식품안전성 및 품질&가격 경쟁력 확보	관련품목	일반
		유형	제도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SMA의 시행으로 제조, 유통시설을 cGMP기준으로 맞추기 위해 노력하며 모든 서류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중국산 제품 및 PB제품 등 저품질, 저가제품의 등장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음 ○ USDA인증 유기농 제품이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선호도는 증가하는 추세로 USDA 유기농 인증지원이 필요시 됨 		

No.	제목	해당국가	미국
2	배 껍질에 검은색 반점 해결방법	관련품목	배
		유형	안전성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 배 생산과정 중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배의 껍질에 검은 색 반점 발생 ○ 애로사항 : 상품의 하자로 여겨져 마켓 납품 시 문제의 소지 ○ 건의사항 : 한국 내에서 배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농약, 살충제 등 화학물질 사용 제고 		

No.	제목	한국산, 중국산, 일본산 등 시장 포화상태	해당국가	미국
			관련품목	팽이버섯
			유형	수출일반
3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팽이버섯은 한국산, 중국산 할 것 없이 이미 공급 과잉으로 경쟁업체가 많음. 한국산 새송이 버섯은 중국산보다 품질 경쟁력이 있으나 팽이버섯은 그렇지 못함 - 한진해운 사태 이후 팽이버섯에 대한 FDA의 검사율이 증가하였음 			

No.	제목	농약 성분 규제 기준 마련	해당국가	미국
			관련품목	인삼
			유형	검역
4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 미국 기준에 맞춰 준비를 하여 인삼 관련 통관 애로사항은 없음 ○ 애로사항 : 토양의 차이로 한국/미국에서 사용되는 농약이 다르나 미국에서는 한국 농약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농약 기준점이 달라 규제 기준 마련이 필요함 			

No.	제목	밤 현지 검역 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해당국가	미국
			관련품목	밤
			유 형	검역
5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 한국에서 검역을 마친 밤을 수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미 검역관이 한국에 파견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에서 반드시 검역을 해야 함 애로사항 : 검역을 위한 컨테이너 운반비용, 대기시간 등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 또한 LA 보다 뉴욕에서의 검역 프로세스가 더욱 복잡하고 비쌌. 		

No.	제목	고추장 클린라벨 제도 개선	해당국가	미국
			관련품목	고추장
			유 형	수출일반
6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 현지마켓에서 클린라벨(No MSG, Gluten-free, Vegan)의 식품 납품 수요가 증가함 애로사항 : 고추장 성분 및 제품 관련한 통관, 검역 문제는 없으나 현지마켓에서 요구하는 클린라벨의 조건을 맞춰 고추장 생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산업용(업소용)고추장의 경우현지마켓에서 제 3자 audit 및 각종 요구사항으로 서류를 준비하는데만 기본 수개월에서 1년을 넘기는 경우가 있음 		

No.	제목	중국산 밤과 가격 경쟁 심화	해당국가	미국
			관련품목	밤
			유 형	수출일반
7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의 경우 중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아 판매가 어려움(특히, 제품 인지도가 낮은 주류마켓에서는 가격에 더욱 민감) 소비자의 가격저항 최소화를 위해 포장 고급화 등 중국산과의 차별화 방안 필요 ○ 매년 소수 한국 수출업체 저가 수출로 인한 유통시장 교란 발생 → 가격경쟁으로 인한 한국산 밤 시장 전체 침체 ○ 장기적으로 밤 스낵 등의 가공품 육성, 수출 지원 필요 		

No.	제목	고추장 현지시장 진입 위한 마케팅 강화	해당국가	미국
			관련품목	고추장
			유 형	수출일반
8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인 시장 진입 노력 중이나 한식에 대한 정착 없이 현지시장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아시안 음식 대비 낮은 수용도를 보이는 한식 저변 확대가 필수적이나 개별 기업 마케팅에 한계 - 소스 홍보는 타 품목보다 장기간의 꾸준한 마케팅 홍보 필요 ○ 미국 현지시장을 겨냥한 정부 차원의 고추장 등 한국 소스, 한식 마케팅 홍보 필수적 		

aT 현지화 지원사업 안내

-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및 현지 바이어(유통업체)
 - 공정거래법 제14조에 의거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원 제외
- ❖ 지원 시기 : 연중 수시
- ❖ 서비스 대상국 18개국
 - (동아시아)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 일본
 - (동남아) 동남아(베트남, 인니, 말련, 태국, 인도 등)
 - (기타) 중동(UAE), 미주(미국, 캐나다, 브라질), EU(프랑스, 독일 등)
- ❖ 지원 내용
 - 수입국 현지 전문기관이 비관세장벽 자문, 라벨링, 상표권 출원 등 지원

지원 사업	지원비율	지원한도	세부 지원내용												
비관세 장벽해소 자문	전액	최대 10회 & 10백만원	○ 수입국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자문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지원(자문)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법률</td> <td>• 계약서 작성, 상표권 및 특허제도 자문, 현지법인 설립 등</td> </tr> <tr> <td>통관</td> <td>• 통관절차 및 통관 필요서류</td> </tr> <tr> <td>관세</td> <td>• 수출가능여부, 제품 사전 검토 등 • 관세율(일반 관세 및 FTA협정관세)</td> </tr> <tr> <td>SPS</td> <td>• 식품관련 법령 및 위생·검역 기준, • 식품검사 및 인증기관 정보 등</td> </tr> <tr> <td>기타</td> <td>• 기타 현지 비즈니스 지원정보 등</td> </tr> </tbody> </table>	분야	지원(자문) 내용	법률	• 계약서 작성, 상표권 및 특허제도 자문, 현지법인 설립 등	통관	• 통관절차 및 통관 필요서류	관세	• 수출가능여부, 제품 사전 검토 등 • 관세율(일반 관세 및 FTA협정관세)	SPS	• 식품관련 법령 및 위생·검역 기준, • 식품검사 및 인증기관 정보 등	기타	• 기타 현지 비즈니스 지원정보 등
			분야	지원(자문) 내용											
			법률	• 계약서 작성, 상표권 및 특허제도 자문, 현지법인 설립 등											
			통관	• 통관절차 및 통관 필요서류											
관세	• 수출가능여부, 제품 사전 검토 등 • 관세율(일반 관세 및 FTA협정관세)														
SPS	• 식품관련 법령 및 위생·검역 기준, • 식품검사 및 인증기관 정보 등														
기타	• 기타 현지 비즈니스 지원정보 등														
※ 자문 서비스 가능 분야(내용)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라벨링* 지원	90%	10백만원	○ 각국 식품법령에 부합하는 라벨 디자인·제작 *사전 샘플 검역·검사 지원												
상표권* 지원	90%	10백만원	○ 상표권 유사상표 조사 및 출원지원 - 유사상표 조사 후 현지 상표국 출원 지원												

※ 수산의 경우는 70% 지원

- ❖ 신청방법
 - On-line 신청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http://global.at.or.kr>)
 -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 무역통계제공정보 동의서 등

2016년 미국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

보고서 기획 및 작성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부

발행일 2017.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행처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061-931-1114 <http://www.at.or.kr>

자료문의 aT 농수산물기업지원센터 수출정보부
 02-6300-1673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www.kati.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

2016년
미국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

